https://www.copyright.or.kr

저작권관계자료 2025-09

2025

# 저작권 상담 사례집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 일러두기

- 사례집의 내용은 유권해석에 따른 판단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 본문 내 저작권법 조항을 인용하는 경우 법명은 생략합니다.

# 차례

2025
저작권
상담 사례집


## 저작권 미리보기

저작권 미리보기 20

## 저작권법의 목적

01. 저작권법의 목적 34

저작권법은 왜 필요한가요?

## 저작물 (보호의 대상)

### 저작물이란

02. 저작물의 정의 38

저작물이란 무엇인가요?

03. 저작물 성립요건 - 창작성 40

아이가 스케치북에 그린 그림이나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도 저작물인가요?

## 저작물의 보호범위


**04.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 사업 모델** 42

사업 모델(Business Model, BM)도 저작물인가요?

**05.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 화풍** 44

저만의 독창적인 화풍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06.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 레시피** 46

TV 방송이나 책자에 나오는 요리법에 따라 요리하는 영상을 제작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07. 역사적 사실** 48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만들려고 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이용하는 것에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 저작물의 종류


**08. 어문저작물 - 기획안** 50

어린이 교육 체험전을 위한 기획안을 작성했는데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나요?

**09. 연극저작물 - 안무** 52

K-POP 댄스음악 안무도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되나요?

**10. 건축저작물** 54

독특한 외관을 가진 카페와 유사하게 카페를 설계해서 건축해도 되나요?

**11. 사진저작물 - 제품사진** 56

다른 사람이 찍은 제품사진을 이용하고 싶은데 저작권 침해인가요?

**12. 영상저작물 - 단순 녹화 영상** 58

CCTV나 블랙박스 영상도 저작물인가요?

## 저작물
(보호의 대상)


**13. 도형저작물 - 지도·설계도** 60

지도나 각종 기계장비 설계도면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있나요?

**14. 2차적저작물 - 번역서** 64

외국 도서를 번역한 경우 저의 번역물이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나요?

**15. 편집저작물 - 상세페이지** 67

웹사이트에 제품을 홍보하는 상세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그 소재인 사진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 저작물성이 문제되는 창작물


**16. 디자인 등 응용미술저작물** 69

의류에 이용된 패턴이나 장신구의 디자인도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되나요?

**17. 제목, 단문, 명언 등** 73

제목, 단체의 명칭, 단어, 유행어, 광고문구, 명언 등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18. 방송프로그램의 포맷** 76

방송 예능 프로그램과 유사한 내용으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도 되나요?

**19. 글자체와 폰트프로그램** 79

인터넷에서 글자체(글꼴 도안)를 손으로 따라 그린 이미지로 포스터를 제작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 퍼블리시티권 및 초상권


**20. 퍼블리시티권** 82

유명인을 대상으로 평전을 쓰면서 인물과 관련된 글이나 사진을 이용해도 되나요?

**21. 초상권** 85

마스크를 쓴 사람과 뒷모습만 나온 사람에게도 초상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 저작권의 발생


**22. 저작권의 발생과 등록** 87

저작권은 특허처럼 등록을 해야만 발생하나요?
등록을 하면 어떤 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22- 1. 저작권 허위 등록** 90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내가 거짓으로 등록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저작권 보호기간


**23. 저작권 보호기간 일반** 92

저작권 보호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3-1. 저작권 보호기간 산정의 기본원칙** 94

1950년대 신문에 실린 논평을 전시하고자 하는데, 해당 논평을 쓴 사람은 1970년대에 사망하였습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나요?

**23-2.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 96

공동저자가 집필한 책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보호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23-3.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 97

옛날 영화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 저작물
(보호의 대상)


**23-4.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 98

옛날 사진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23-5.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100

클래식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클래식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자유이용할 수 있나요?


## 저작자
(저작권의 귀속)


**24. 저작권 귀속의 기본원칙** 104

저작권은 최초에 누가 가지게 되나요?

**25. 공동저작자** 105

대학 조별 과제로 영상을 제작했는데, 누가 저작자가 되나요?

**26.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107

회사에서 업무상 제작한 설계도를 퇴사 후에도 이용할 수 있나요?

**27. 위탁저작물의 저작자** 109

공연기획사로부터 발레안무가 및 예술감독으로 제안을 받아 발레 안무를 완성한 경우 발레 작품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28.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영상저작물 특례규정)** 112

학창시절 출연하여 찍은 학교 홍보 영상이 지금도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는데 저작권법을 근거로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 저작권의 내용


29. 저작권 일반 118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저작인격권

30. 공표권 120

아직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그림의 원본을 직접 그린 지인에게 선물 받았는데, 호텔 로비에 전시해도 되나요?

31. 성명표시권 122

필명으로 활동하는 소설가의 작품에 작가의 본명을 표기해도 되나요?

32. 동일성유지권 - 저작물 폐기·파괴 125

작가에게 의뢰하여 조형물을 만들어 설치했는데, 의뢰인이 작가와 협의 없이 조형물을 폐기해도 되나요?

### 저작재산권

33. 복제권 - 트레이싱 127

유명 그림을 트레이싱해서 SNS에 게시해도 되나요?

34. 공연권 - 공중의 정의 129

5~6명 정도 소수의 동아리원들과 동아리실에서 연극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침해인가요?

35. 공중송신권 - 버스킹 영상 업로드 131

버스킹 공연을 해도 되나요?
제가 버스킹 공연한 영상을 SNS에 올려도 되나요?

35- 1. 인터넷 링크 133

우리 회사가 소개된 신문 기사들을 모아 누리집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가요?

35- 2. 불법 사이트 링크 136

불법 사이트에 링크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 저작권의 내용


**36. 배포권 - 권리소진의 원칙** 138

서점에서 구매한 책을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해도 되나요?

**37. 대여권 - 게임 CD 대여** 140

구매한 게임 CD를 돈을 받고 빌려주는 대여점을 운영해도 되나요?

**37-1. 배포권, 대여권 - 공공도서관** 142

공공도서관에서 구입한 DVD를 도서관 이용자(회원)에게 대여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되나요?

**38. 2차적저작물작성권 - 강의 영상 제작** 144

시중에 판매되는 학습교재를 이용하여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고, 유튜브에 게시해도 되나요?

## 저작재산권 양도 및 이용허락


**39. 저작물 이용 일반** 150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9-1. 영화 포스터 이용** 152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는 영화제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때 영화포스터를 홍보목적으로 이용해도 되나요?

**39-2. 음악저작물 이용** 154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고 싶어서 캐럴을 틀려고 하는데, 저작권 문제 때문에 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카페에서 캐럴을 틀면 문제가 되나요?

**40. 저작재산권 양도와 이용 허락** 156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사진을 구매한 경우, 제가 사진의 저작권자가 되나요?

**41. 저작재산권의 상속** 158

사망한 작가의 사진 작품을 이용하려면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42.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 160

책을 단독으로 유통하고 전자책도 출판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43. 2차적저작물 이용을 위한 이용 허락** 162

'해리포터' 영화를 연극으로 제작하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44. 영상 출연자의 저작물 이용** 164

TV 방송에 우리 회사가 나왔는데, 해당 방송영상을 회사 홍보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45. 뉴스 저작물 이용** 166

뉴스를 요약하거나 캡처하여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 저작재산권 양도 및 이용허락


**46. 저작권 계약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표준계약서** 168

신인 작가로서 처음으로 출판사와 계약을 진행 중인데 참고할 만한 계약서가 있나요?

**47. 법정허락** 171

저작권자 미상인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8. 공유·기증저작물 이용** 173

저작권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글꼴(폰트)이 있나요?

**49. 저작권 신탁** 175

신탁단체에 신탁된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50. 북한저작물의 이용** 177

북한 작가의 작품을 이용할 때도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 저작 재산권의 제한


**51.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일반** 182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52.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 제24조** 185

유튜브 영상 제작 시, 해외 각국 유명 정치가의 연설을 이용해도 되나요?

**53.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제24조의2** 18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들은 자유롭게 이용해도 되나요?

**54.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제25조** 189

학교의 온라인 수업을 위해 교과서나 인터넷에 공개된 다양한 자료들을 일부 활용해도 되나요?

**55.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제28조** 192

책이나 영화, 음악 등 각종 문화 콘텐츠 관련 감상글을 작성해서 블로그에 올리고 있는데 관련 책표지나 감동받은 구절, 노래 가사, 공연 포스터 일부를 이용해도 되나요?

**56. 비영리 공연과 방송 - 제29조 제1항** 196

도서관에서 낭독회를 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57. 상업용 음반의 공연 - 제29조 제2항** 198

학교에서 방송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학생들을 위해 음악을 틀어주려고 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58. 영상저작물의 공연 - 제29조 제2항** 200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주민들을 위해 무료로 영화를 보여줘도 되나요?

**59.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제30조** 204

혼자 공부하기 위해 시험문제를 복제해서 이용해도 되나요?

## 저작 재산권의 제한


60. 시·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 제33조 및 제33조의2 207

재능기부로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점자나 수어로 변환하여 제공해도 되나요?

61.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 제35조 209

미술작품 원본을 소유하고 있는데, 전시할 수 있나요?

62.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의 이용 - 제35조 212

유명거리의 벽화를 사진으로 찍어 달력이나 엽서 상품으로 제작해서 판매해도 되나요?

63. 부수적 복제 - 제35조의3 214

영화관에서 브이로그 촬영 중에 배경으로 영화 포스터가 찍혔습니다. 저작권 침해인가요?

64.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제35조의5 216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사항들을 고려하게 되나요?

65.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219

학교 수업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CD로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줘도 되나요?

##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66. 실연자의 권리** 224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역할을 모방해서 광고를 제작하면 실연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나요?

**67. 실연자의 권리·음반제작자의 권리** 228

음악을 인터넷에 올리려고 하는데(SNS, BGM 등)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68. 방송사업자의 권리** 231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경기 시청을 위한 입장료를 받고 TV 중계방송을 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69.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233

채용정보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구인구직 데이터 베이스(DB)의 일부를 정리하여 고객들에게 배포해도 되나요?


## 침해 대응 · 권리 구제


**70. 저작권 침해의 요건** 240

몇 년 전 내가 쓴 웹소설의 내용과 유사한 드라마가 있는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70-1. 저작권 침해의 요건(2)** 243

시험문제의 보기 순서를 바꾸거나, 시험문제 중 특정 단어 1~2개를 교체하여 입시학원 문제집에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71.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기준** 245

제가 건축물을 축소하여 만든 모형(원본 모형)을 다른 사람이 유사하게 만들어(유사 모형)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 침해 대응 · 권리 구제


**72. 패러디와 저작권 침해** 248

영화의 일부 장면이나 포스터를 패러디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73. 글꼴(폰트) 무단 이용** 252

(카페, 블로그 등)에서 이용 제한 표시를 확인할 수 없는 글꼴(폰트)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했습니다.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나요?

**74.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254

유명 연예인 사진이나 캐릭터 이미지를 이용하여 '굿즈(goods)' 또는 '인스(인쇄소 스티커)'를 제작해도 되나요?

**75. 침해로 보는 행위 - 저작권 침해물 배포목적 수입** 256

중국에서 유명 캐릭터 상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나요?

**76. 민형사상 구제방법** 258

다른 사람이 내 저작권을 침해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77. 양벌규정** 262

회사에서 직원이 불법 프로그램저작물을 이용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78. 외주제작 업체의 글꼴(폰트) 무단 이용** 265

외주 웹디자이너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글꼴(폰트) 파일을 이용해 작업한 경우, 누리집 제작을 의뢰한 자(용역 발주자)가 책임을 지나요?

**79. 외국인의 저작물 보호 - 준거법** 267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저작물은 어떻게 보호가 되고, 저작권 침해 발생 시 준거법은 어떻게 되나요?

**80.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 270

제 저작물을 무단으로 올려놓은 게시물을 발견했는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예: 네이버, 다음)에 해당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나요?

## 주요이슈


**81. 생성형 AI** 276

생성형 AI 기술로 만든 산출물은 저작물인가요?

**82. 생성형 AI** 278

생성형 AI가 스케치한 그림에 인간이 채색하고 수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창작성을 가미한다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나요?

**83. 생성형 AI** 279

직접 생성한 AI 산출물은 자유롭게 이용해도 무방한가요?

**84. 생성형 AI** 280

AI 커버곡을 제작하는 것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건가요?
AI 커버곡을 제작하여 이용하려면 누구에게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85. 생성형 AI** 282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도 일반적인 저작물과 동일한가요?


## 부록


저작물 이용 시 저작권 침해 점검 목록 286

저작권 침해 시 대응 방법 289

저작권 관련 참고자료 위치 안내 291

저작권 관련 주요 사이트 안내 293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294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SNS 295

저작권 법률상담 295

2025

# 저작권 상담 사례집

# 저작권 미리보기

# 저작권 미리보기

## 지식재산권과 저작권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며, 문학, 학술 또는 예술적 저작물로 대표되는 사람의 창작적 표현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과 산업 및 경제 활동과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과 같이 기술·방법이나 식별표지, 물품의 모양 등에 대한 권리인 '산업재산권'의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

**지식재산권**

- **저작권 :**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 **산업재산권 :**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기타 지식재산권 :** 부정경쟁방지법 등

## 저작권법의 목적(제1조)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

## 저작물이란(제2조 제1호)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 저작물의 예시(제4조)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제7조)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에서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

## 저작자란(제2조 제2호)

저작물을 창작한 자(자연인, 법인·단체 또는 사용자)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제9조)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제2조 제31호)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됨. 다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함.

##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로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됨.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고, 저작인격권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임.

## 저작권의 발생(무방식주의)

저작권의 발생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저작권 표시 ⓒ, 등록, 납본, 기탁 등 일체의 절차나 형식을 요하지 않음(제10조 제2항). 따라서 저작물이 창작만 되었다면 등록이라는 별도의 절차 없이도 헌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저작권의 법적 성질

- 저작권은 배타적인 권리로서 준물권적 성질을 가짐.
- 저작재산권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음(제45조 제1항).
-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제46조 제1항 및 제2항).
-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음(제14조).

## 저작인격권

| 종류 | 저작인격권(제11조~제13조) 내용 |
|---|---|
| 공표권<br>(제11조) |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 |
| 성명표시권<br>(제12조) | 저작물 등에 자신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 |
| 동일성유지권<br>(제13조) |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에 대한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

## 저작재산권

| 종류 | 저작재산권(제16~제22조) 내용 | |
|---|---|---|
| 복제권(제16조) |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권리 | |
| 공연권(제17조) |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 | |
| 공중송신권(제18조) | 저작물 등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 또는 이용에 제공할 권리 | |
| | 방송 |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할 권리 |
| | 전송 |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할 권리(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 포함) |
| | 디지털 음성송신 |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을 송신할 권리(전송 제외) |
| 전시권(제19조) | 미술·사진·건축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 | |
| 배포권(제20조) |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할 권리 | |
| 대여권(제21조) | 상업용 음반이나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 | |
| 2차적저작물 작성권(제22조) |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에 의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 |

##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 데에 자본 투자와 창의적인 기여를 한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이며,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이에 해당함.

| 종류 | 저작인격권(제11조~제13조) 내용 |
|---|---|
| 실연자 | - 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br>-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생실연)공연권, 방송권, 전송권<br>- 상업용음반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상업용음반공연보상청구권 |
| 음반제작자 | -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br>- 상업용음반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상업용음반공연보상청구권 |
| 방송사업자 | - 복제권<br>- 동시중계방송권<br>- 공연권(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한함) |

## 저작권의 보호기간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자동적으로 발생하지만 영구적으로 존속하는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은 목적의 영리성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 구분 | 보호기간 |
|---|---|
| 저작재산권<br>(제39조) | - 저작자 생존 및 사후 70년<br>- 공동저작물의 경우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 사후 70년 |
| 무명 또는<br>이명저작물<br>(제40조) | - 공표된 때로부터 70년(이 기간 내에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지났을 때는 그 때 소멸함)<br>- 공표된 때로부터 70년 이내에 실명 또는 이명이 밝혀진 경우 및 실명으로 저작권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후 70년 규정 적용 |
| 업무상저작물<br>(제41조) | - 공표한 때로부터 70년(창작한 때로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 창작한 때부터 70년) |

| 구분 | 보호기간 |
|---|---|
| 영상저작물<br>(제42조) | - 공표한 때로부터 70년(창작한 때로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 창작한 때부터 70년) |
| 계속적간행물<br>(제43조) | - 책, 호, 회 등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의 경우 매책, 매호, 매회를 공표 시로 함<br>-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의 경우 최종 부분을 공표한 때를 공표 시로 함<br>-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전부를 완성하는 저작물이 최근 공표 시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도 공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맨 뒤의 부분이 공표된 때를 공표 시로 함 |
| 저작인접권<br>(제86조) | - 실연을 한 때, 음반을 발행한 때로부터 70년<br>- 방송을 한 때로부터 50년<br>- 실연을 한 때로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 때로부터 70년<br>-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로부터 50년이 경과한 때까지 음반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로부터 70년 |
| 데이터베이스<br>(제95조) | - 제작을 완료한 때로부터 5년<br>- 갱신을 위하여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갱신한 부분에 한하여 갱신을 한 때로부터 5년 |
| 보호기간의 기산<br>(제44조) |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망 또는 저작물을 창작,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함 |
| 외국인의 저작물<br>(제3조) | -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상호주의에 따라 제한 가능)<br>-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br>-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국내에서도 보호하지 않음 |

##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법은 저작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따라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범위 안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 ■ 저작재산권 제한 관련 규정

- 재판 등에서의 복제(제23조)
-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제24조)
-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제24조의2)
-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제27조)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제29조)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제31조)
-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제32조)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제33조)
-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제33조의2)
-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제34조)
-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제35조의2)
- 부수적 복제 등(제35조의3)
-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제35조의4)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5)
- 번역 등에 의한 이용(제36조)
- 출처의 명시(제37조)
- 저작인접권의 제한(제87조)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한(제94조)
-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제101조의3)

- 프로그램코드역분석(제101조의4)
-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제101조의5)

##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

## 저작권 등록의 효과

### ■ 추정력

저작자 성명과 저작물의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 등을 등록하면 해당 등록 사실에 대해 법적인 추정력을 받음(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창작연월일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된 창작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음). 따라서 등록된 권리자는 등록된 추정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면하므로 추정사실을 부인하려는 자가 법률상 추정을 번복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함. 아울러 등록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 대항력

권리 변동 사실이나 출판권 설정 등을 등록하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음.

### ■ 법정 손해배상 청구 가능

침해행위가 일어났을 때 원고가 실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저작물마다 1천만 원,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의 경우 5천만 원 이하)을 법원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법적 구제

- 저작권을 침해하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함.
- 민사상 책임은 재산적·인격적 피해를 보전할 책임을 말하며, 침해를 당한 자는 침해예방청구, 침해정지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를 정지시키거나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음.
- 형사상 책임은 법질서 위반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말하며, 침해를 당한 자는 고소를 할 수 있고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침해자에게 징역·벌금 등의 형벌이 내려짐.
- 저작권법 위반죄는 원칙상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함. 저작재산권 등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저작권위탁관리업

권리자로부터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접권을 신탁받거나 저작권 행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업.

| 구분 | 권리신탁단체명 | 전화번호 | 신탁 범위 |
|---|---|---|---|
| 음악 | **한국음악저작권협회**<br>www.komca.or.kr | 02-2660-0400 | 음악저작자(작곡·작사)의 권리 |
|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br>www.koscap.or.kr | 02-333-8766 | 음악저작자(작곡, 작사)의 권리 |
| | **한국음반산업협회**<br>www.riak.or.kr | 02-3270-5900 | 음반제작자의 권리<br>(신탁관리 및 이용 허락) |
| | **한국연예제작자협회**<br>www.k-pops.or.kr | 02-2677-7630 | 음반제작자의 권리<br>(보상금 징수 및 분배) |
|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br>www.fkmp.kr | 02-745-8286 | 음악실연자<br>(가수, 연주자 등)의 권리 |

| 구분 | 권리신탁단체명 | 전화번호 | 신탁 범위 |
|---|---|---|---|
| 어문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br>www.kolaa.kr | 02-2608-2800 | 어문, 사진, 이미지 저작물에 대한 권리<br>*(구)복제전송저작권협회/문예학술저작권협회 통합 |
| | **한국방송작가협회**<br>www.ktrwa.or.kr | 02-782-1696 | 방송작가의 권리 |
| |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br>www.scenario.or.kr | 02-2275-0566 | 영화시나리오작가의 권리 |
| 방송/언론 |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br>www.kobpra.or.kr | 02-784-7802 | 방송 실연자 (탤런트, 성우 등)의 권리 |
| | **한국언론진흥재단**<br>www.kpf.or.kr | 02-2001-7114 | 신문기사 등에 대한 권리 |
| 영화 | **한국영화제작가협회**<br>www.kfpa.net | 02-2267-9983 | 영화 등에 대한 권리 |
| 공공 저작물 | **한국문화정보원**<br>www.kcisa.kr | 02-3153-2820 | 공공저작물에 대한 권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 CCL(Creative Commons License, http://ccl.cckorea.org)

저작권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선스 표시제도

| 라이선스 | 이용조건 | 문자표기 |
|---|---|---|
| | **저작자표시**<br>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제목, 출처 등 저작자에 관한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 CC BY |
| | **저작자표시-비영리**<br>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CC BY-NC |
| | **저작자표시-변경금지**<br>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 CC BY-ND |
| |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br>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고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2차적저작물에는 원저작물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 CC BY-SA |
|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br>저작자를 밝히면 이용 및 저작물의 변경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2차적저작물에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 CC BY-NC-SA |
|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r>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 CC BY-NC-ND |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공공누리(KOGL)]

-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는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 저작물을 보유한 기관에 개별 허락을 받지 않고, 적용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
-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변경 가능 여부에 따라 공공누리 4가지 유형으로 개방

| 유형 | 표시방법 | 이용 허락 범위 |
|---|---|---|
| 1 |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 출처 표시<br>- 상업적 용도로 이용 가능<br>- 내용변경 등 2차적저작물작성 가능 |
| 2 |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 출처 표시<br>- 비상업적 용도로만 이용 가능<br>- 내용변경 등 2차적저작물작성 가능 |
| 3 | OPEN 출처표시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 출처 표시<br>- 상업적 용도로 이용 가능<br>- 내용변경 등 2차적저작물작성 불가 |
| 4 |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 출처 표시<br>- 비상업적 용도로만 이용 가능<br>- 내용변경 등 2차적저작물작성 불가 |

2025

# 저작권 상담 사례집

# 저작권법의 목적

## 저작권법의 목적

Q

# 01. 저작권법은 왜 필요한가요?

A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을 향상·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저작권이나 이에 인접한 권리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이익을 얻음으로써,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이 박탈될 수 있다. 또한 저작자의 의도와 다르게 저작물이 변형되고 왜곡되어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저작자나 저작인접권자들의 창작 의욕이 꺾여 이들의 창작 활동이 중단될 수도 있고, 이는 결국 국민이 풍요로운 문화를 누릴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저작자의 정신적 노력과 인격이 투영된 저작물을 보호하고 정당한 이익을 분배하여 창작 활동을 독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문화·예술·학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저작권법이 필요하다.

다만, 권리자의 이익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후행 창작자들의 창작 환경이 위축되고 저작물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익이나 공공의 이익이 배제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일정한 경우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제23조 내지 35조의5까지)를 두는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저작권법은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단지 창작자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025

# 저작권 상담 사례집

# 저작물
# (보호의 대상)

- 저작물이란
- 저작물의 보호범위
- 저작물의 종류
- 저작물성이 문제되는 창작물
- 퍼블리시티권 및 초상권
- 저작권의 발생
- 저작권의 보호기간

Q

## 02.
## 저작물이란 무엇인가요?

A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1]**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 2)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1)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표현'임을 주목해야 한다.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외부에 표현되지 않았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즉, 아이디어를 이용해 제작된 결과물이 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이지, 그 안에 내재된 아이디어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저작권법에서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이라고 한다. 이러한 구분을 두는 이유는 저작물에 내재된 사상, 관념은 여러 가지 형태의 창작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를 특정인의 배타적인 권리로 인정하면 다양한 창작물의 생성을 가로막음으로써 저작권법의 본래 목적인 '학문, 문화, 예술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2)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2]

한편, 저작권법 제4조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등 저작물의 9가지 종류를 예시하고 있다. 이는 열거가 아닌 예시에 불과하므로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만 충족된다면, 그 밖의 종류의 창작물도 얼마든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도움판례**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6264 판결(한글교육방식)**

한글교육교재인 글자교육카드 및 그것이 채택하고 있는 순차적 교육방식과 관련하여 법원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어야 하므로,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설의 스토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2 대법원 2014. 4. 27. 선고 2012다28745 판결.

Q

## 03.
## 아이가 스케치북에 그린 그림이나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도 저작물인가요?

A

**아이의 창작성이 표현된 결과물이라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창작성이란 수준 높은 예술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다른 저작물을 베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즉, 다른 사람의 것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이 부여되어 있으며,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한 것이다.[3]

그러므로 아이가 스케치북에 그린 그림,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그리고 지인에게 쓴 편지와 같이 고도의 예술성을 갖추지 않은 작품이라도 최소한의 정도로 저작자의 개성이 반영되어 있다면, 이는 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3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그러나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어,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도움판례

### 서울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한 책에 실존 인물이 직접 작성한 편지를 이용한 사안에서 법원은 "편지의 내용은 위 이휘소가 미국에서의 유학 및 가정생활과 연구활동 등에 관한 것으로, 위 편지에는 위 이휘소가 생활 속에서 느끼는 감정, 어머니와 형제 등에 대한 그리움, 물리학에 관한 평소의 생각 등이 나타나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편지는 위 이휘소의 감정과 사상이 표출되어 있는 것으로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편지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였다.

Q

## 04.
## 사업 모델 (Business Model, BM)도 저작물인가요?

A

○ △ X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저작물로 보호되므로 사업 모델이나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사업 모델이란, 회사의 사업을 위해 어떠한 가치를 만들고, 어떠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케팅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할지에 대한 계획 또는 사업 아이디어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업 모델은 기업의 수익과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사업자들은 새로운 모델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다른 기업의 우수한 사업 모델을 자신의 사업과 비교 분석하여 장점을 따라 배우는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전략을 구축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업 모델을 바탕으로 기획서 등을 작성하였다면, 그 결과물인 기획서 등은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보호범위는 기획서에 나타난 표현(서술된 문장, 그림, 사진 등)에 그칠 뿐이므로 내재된 아이디어만을 차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

한편, 이러한 서비스 방식(아이디어)이 산업성,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특허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타인이 무단으로 도용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 민법상 불법행위 등 다른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Q

## 05.
## 저만의 독창적인 화풍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화풍, 그림의 기법이나 방법 등은 아이디어에 해당하므로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한다.**

전시장이나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독특한 화풍의 그림들이 이목을 집중시킨다. 기존의 방식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하거나 유명한 작품을 유쾌하게 비트는 사례도 있고, 작품에 이용되리라고 상상하기도 힘들었던 독특한 도구나 재료가 등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작품의 방식이나 작품에 내재된 사상 등은 하나의 흐름을 이루어 새로운 미술 사조로 발전하기도 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방식이나 방법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통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기존에 없던 독특한 화풍이나 기법이라도 그 자체를 보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화풍을 따라 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화풍이나 기법이 아닌 창작적인 '표현'을 베끼는 것은 저작권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도움판례

### 서울지방법원 2001. 3. 16. 선고 99가합93776 판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어야 하는 것이고,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며,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도움판례

### 서울민사지법 1990. 4. 19. 선고 89가합39285 판결('한복디자인 기법')

"예컨대 회화에 있어서의 화풍이나 소설류에 있어서의 테마기법 등에 아이디어 자체는 독점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단지 그 기법이나 아이디어에 의해 작성된 표현물 자체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Q

## 06.
## TV 방송이나 책자에 나오는 요리법에 따라 요리하는 영상을 제작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A

○ △ X

**음식을 만드는 재료나 순서, 방법(레시피)을 습득한 후, 작성자만의 독자적인 표현으로 그 과정을 소개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요리 방법 자체를 의미하는 '레시피'는 아이디어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TV나 책자, SNS를 통해 알려진 요리 방법 자체만을 습득하여 그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한편, 공개된 요리 방법을 말이나 글, 사진, 영상 등을 통해 독창적으로 표현한다면, 그 표현된 '말이나 글, 사진, 영상' 등은 새로운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즉, 레시피를 따라 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지만, '영상저작물의 요리 장면'을 캡처하여 이용하거나 요리 책자 및 블로그 등의 '설명글, 사진' 등을 그대로 베껴서 이용하는 것은 원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여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4]

## 도움판례

### 서울지방법원 2003. 5. 16. 선고 2001가합78237 판결('안동찜닭')

안동지방에서 유래한 찜닭 요리 프랜차이즈 카탈로그의 '글과 이미지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사안에서 법원은 "저작물 중 사업설명문, 광고문 및 점포시설투자 표는 안동찜닭 및 그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한 원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 즉 아이디어를 표현한 지적·문화적인 창작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미지 사진은 단순히 안동찜닭 요리 자체를 촬영하였다기보다는, 닭고기, 고추, 감자, 당면 등 재료들이 조화롭게 배치되고 또한 푸짐하게 접시에 담겨 있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안동찜닭의 맛깔스러운 이미지를 부각시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진이라는 점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을 엿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4 서울지방법원 2003. 5. 16. 선고 2001가합78237 판결('안동찜닭').

Q

## 07.
##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만들려고 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이용하는 것에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A

○ △ X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이 아닌 단순한 정보, 역사적 사실, 수치 등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이 아닌 단순한 정보, 역사적 사실, 수치 등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즉, 역사적 사실을 이용하는 것 자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하게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거나 사료를 인용한 경우, 일반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인 경우, 선행 서적에도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문장 자체가 너무 짧거나 표현 방법의 제약이 있어 표현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개성이

표현되었다고 할 수 없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기 어렵다.

반면, 역사적 사실을 적절한 비유 등을 들어 본인만의 방식으로 서술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경우 등은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휘될 가능성이 커 그 부분에 대한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

**도움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6.30. 선고 2005가단197078 판결**

"역사적 사실은 어느 한 작가의 저작권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공공의 영역(public domain)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와 동일한 역사적 배경 및 사실을 자신의 저작물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 저작물 중 환타지적 요소 중에서도 그것이 원고가 새롭게 독창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신화나 설화를 통해 일반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그에 대해서도 원고의 저작권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도움판례**

**대법원 2014.6.12. 선고 2014다14375 판결**

"이 사건 서적 중 석굴암이 건립되던 8세기 중엽의 신라의 정치상황에 대한 서술은 역사적인 사실을 나열한 것이고, 동틀돌에 관한 표현은 동틀돌의 모습을 통해 추론되는 설계 및 기능을 설명한 것이며, 화쟁에 관한 표현은 화쟁사상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조각상에 관한 표현은 조각상의 특성, 외관을 단순히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거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표현의 범주를 벗어날 정도의 묘사라고 보기 어려워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하 생략)"

Q

## 08.
## 어린이 교육 체험전을 위한 기획안을 작성했는데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새로운 아이디어나 사실 정보' 그 자체는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기획자의 의도와 이를 구체화한 내용 및 구성이 '기획안'에 개성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기획안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체계적인 수행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획안이나 사업제안서 등이 작성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획안 등은 예술적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기존에 알려진 아이디어나 이론, 사실 정보 등을 기초로 하기에 그 내용이 독창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획안 등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아이디어나 사실 정보'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 등을 전달하기 위한 작성자만의 정신적 노력 및 기존의 내용과 구별할 수 있는 '독창적인 표현'을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만일 어린이 교육 체험전을 위한 기획안에 기획자 나름의 의도와 이를 구체화한 내용 및 구성이 개성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해당 기획안은 어문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덧붙여, 이러한 기획안을 실체적으로 구현한 '체험전' 또한 2차적저작물로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다.

## 도움판례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6다208600 판결['기획안(밀가루 체험전)']

밀가루를 이용한 어린이 교육 체험전 관련 침해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기획안에는 각각의 테마와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독특한 공간에서 가루, 음식, 반죽, 통밀의 형태로 변화하는 밀가루를 오감으로 체험하도록 하는 작품의 의도와 이를 구체화한 체험 놀이의 구성, 극의 줄거리(시놉시스)가 개성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중략) 체험전은 그 구성 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에 따라 선택·배열되고 유기적으로 조합됨으로써 각각의 테마와 이야기의 흐름을 공간에서 실체적으로 구현하여 이 사건 기획안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면서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창작적 노력이 부가되어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2차적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판시하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Q

## 09.
## K-POP 댄스음악 안무도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되나요?

A

**몸동작은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려우나, 신체적 동작과 몸짓의 동선을 창조적으로 조합한 안무는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

유명인의 춤동작('밀리 록 댄스', '칼튼 댄스', '더 플로스 댄스')이 온라인 게임('포트나이트')에 이용되면서 이러한 춤동작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지 논란이 된 바 있다. 춤은 '짧게 반복되는 동작'에서부터 '복잡한 안무'까지 그 범위가 넓은데, 어느 범위에서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사교댄스의 스텝, 반복되는 단순한 동작, 몸을 단련하기 위한 스포츠(태권도, 요가, 헬스 등) 동작 등은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못하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한다. 일률적으로 저작물성을 부인할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단순한 스텝이나 동작 몇 가지만으로는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성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5]

그러나 K-POP 댄스음악의 안무 등은 저작권법상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K-POP의 안무 역시 개별 스텝이나 동작 하나하나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 노래의 전체적인 흐름, 분위기, 가사 진행에 맞게 일련의 신체적 동작과 몸짓을 창조적으로 조합·배열한 것으로서 안무가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에 한해 보호될 수 있다.[6]

따라서 만일 특정 댄스음악의 안무를 영리를 목적으로 공연하거나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 등에 게시하고자 한다면, 안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도움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1나104668 판결('샤이보이 안무')

안무의 저작물성에 관하여 법원은 "각종 댄스 장르의 전형적인 춤 동작, 그리고 이미 공개된 여러 춤에서 발견되는 특징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이 사건 안무는 'J'라는 노래의 전체적인 흐름, 분위기, 가사 진행에 맞게 종합적으로 재구성된 것이고, 4인조 여성 그룹 'I' 구성원(K, L, M, N)의 각자 역할(랩, 노래, 춤 등)에 맞게 춤의 방식과 동선을 유기적으로 구성하였으며, 기존에 알려진 다양한 춤 동작도 소녀들로 구성된 'I'과 'J'라는 악곡의 느낌에 맞게 상당한 창조적 변형이 이루어졌고, 각 춤 동작들이 곡의 흐름에 맞게 완결되어 이 사건 안무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품으로 인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안무는 전문 안무가인 원고가 'J'노래에 맞게 소녀들에게 적합한 일련의 신체적 동작과 몸짓을 창조적으로 조합·배열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다.

5 東京地裁 平成24年(2012) 2月 28日 선고 平成20年(ワ)第9300□ 판결; 영화 "Shall We Dance"에 사용된 사교댄스 안무의 저작물성에 대해 법원은, 극히 짧은 기본 스텝과 변형 모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흔한 것이며 이러한 짧은 몸의 움직임 자체에 저작물성을 인정하여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인간의 움직임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침해를 부정한 바 있다.

6 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1나104668 판결('샤이보이 안무').

Q

## 10.
## 독특한 외관을 가진 카페와 유사하게 카페를 설계해서 건축해도 되나요?

A

○ △ X

**건축물에 건축가만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다면 건축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있으므로, 이를 모방하여 건축물을 설계·건축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저작권법은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의 종류 중 하나로 예시하고 있다.[7] 건축물에서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디자인, 즉 공간과 각종 구성요소의 배치와 조합을 포함한 전체적인 틀이다. 여기서 보호대상은 반드시 건축물 전체일 필요는 없고, 특정한 공간 일부도 저작자의 예술성이나 창조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다면 보호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강릉의 유명 카페('테라로사') 건축물이 보호받는 저작물로 인정되면서 이를 모방하여 시공·설계한 건축사에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바 있다.[8]

7 저작권법 제4조 제5호.
8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테라로사').

다만, 건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주거성, 실용성, 기술성 등) 저작물로서, 건축 분야의 일반적인 표현 방법, 그 용도나 기능, 이용자의 편의성 등에 따라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표현 방법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일반적인 표현 방법에 따라 건축된 전형적인 아파트나 일반 주택과 같은 건축물은 보호되기 어렵고[9] 저작자의 독자적인 표현 즉 창조적 개성이 표현되어 미적인 외형을 갖춘 경우에만 보호될 수 있다.

## 도움판례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테라로사')

카페 건축물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안에서 법원은 "시공한 카페 '○○○○'의 건축물(이하 '피해자 건축물'이라 한다)은, 외벽과 지붕슬래브가 이어져 1층, 2층 사이의 슬래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형상, 슬래브의 돌출 정도와 마감 각도, 양쪽 외벽의 기울어진 형태와 정도 등 여러 특징이 함께 어우러져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 건축물은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9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29 판결('아파트 평면설계도').

Q

## 11.
## 다른 사람이 찍은 제품사진을 이용하고 싶은데 저작권 침해인가요?

A

**제품사진이 피사체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워 이를 이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우선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며, 그 요건으로서 '독자적인 작성'과 '최소한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야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는 표현의 경우, 즉 창작적 표현에 제약이 크면 클수록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사진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피사체를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으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피사체의 선정·구도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사체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거나,[10] 연예인 '파파라치' 사진과 같이 우연히 포착한 사진[11] 등은 촬영자의 독자적인 개성을 표현할 여지가 적어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다.

제품사진의 저작물성과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제품 자체의 모습을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둔 사진은 사물을 복제한 것에 불과할 뿐, 별도의 창작적 표현이 부가되지 않아 저작권법상의 보호가 부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12] 따라서 제품사진이 피사체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워 이를 이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반면,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발휘된 사진이라면,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

**10**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햄제품 광고'),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찜질방 내부전경').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가단215014 판결('파파라치'); 촬영자가 유명인 사생활에 대한 사실 전달의 목적 달성을 넘어서서 사진에 대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한 노력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성을 부정하였다.

**12**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햄 제품 광고').

Q

## 12.
## CCTV나 블랙박스 영상도 저작물인가요?

A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므로, 기계적으로 녹화된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은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다.**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창작한 것을 말한다.[13] 우리가 흔히 접하는 애니메이션, 영화, TV 방송 등의 영상물이 이에 해당한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영상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촬영 기법 및 편집 기술, 즉 카메라의 각도, 줌의 조정, 촬영된 영상의 선별, 편집 과정에서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기계적으로 녹화된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13 저작권법 제2조 제13호 참고.

표현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다.

그러나 원본영상을 편집한 경우, 그 편집에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국에서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편집해 새로 제작한 영상의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도움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2. 6. 13 선고 2011나52200 판결

법원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므로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에 따라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나, 보도표현에 있어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른 것이면 제외되지 아니한다. 한편 영상저작물은 그 보도된 표현과 별도로 소재의 선택과 배열, 카메라 구도의 선택, 필름 편집, 그 밖의 제작 기술로 표현되는 창작성이 존재하면 저작물로 인정된다."라고 판시하였다.

Q

## 13.
## 지도나 각종 기계장비 설계도면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있나요?

A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용도나 기능 자체는 보호되지 않지만, 지도나 설계도면에 나타난 작성자만의 '독창적인 표현'은 보호될 수 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저작자만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저작권법은 "지도·도표·설계도[14]·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14 건축저작물과 도형저작물의 '설계도면' 관련하여, 건축저작물은 설계도에 내재되어 있는 건축물 외형의 창작성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도형저작물은 2D 설계도면의 창작성을 보호대상으로 한다(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저작권 등록 심사 편람」, 저작권관계자료(2020-08), 296면 참조).

있다.[15] 이와 같은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도형저작물을 보호한다는 것은 그 안에 내재된 '기술적 사상이나 방식'이 아니라, 지도나 설계도에 나타난 '표현' 그 자체만을 보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설계도에 따라 물품을 제작하더라도 설계도에 내재된 기술적 사상이나 방식만을 이용한 것이라면, 도형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설계도를 그대로 따라 그린다면, 설계도에 나타난 표현을 복제하는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도는 지구상의 자연적 또는 인문적인 현상을 미리 약속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발휘될 여지가 적다.[16]기계설비 등의 설계도면 역시 특정 기계장치나 시스템의 규격 등을 표현하기 위해 이해의 편의성을 고려하게 되므로 그 표현방식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17] 그만큼, 기능적 저작물이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춘천시관광지도' 사례처럼 자연적·인문적 현상을 미리 약속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왜곡을 통해 기존의 지도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지도를 창작하였다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18] 즉 지도에 저작자만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이라고 하여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부정될 것은 아니므로, 다른 사람이 제작한 지도나 설비도면을 그대로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혹여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

**15**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8호.
**16**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50586 판결('전국도로관광지도').
**17**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지하철화상전송설비').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1. 선고 2005가단12610 판결('춘천시관광지도').

## 도움판례

###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50586 판결('전국도로관광지도')

전국의 지명, 지형, 도로 및 주요 관광지 등을 망라한 지도책자의 '저작물성'에 대해 법원은 "일반적으로 지도는 지표상의 산맥·하천 등의 자연적 현상과 도로·도시·건물 등의 인문적 현상을 일정한 축적으로 미리 약속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지도상에 표현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은 사실 그 자체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지도의 창작성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는 지도의 내용이 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을 종래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 여부와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도의 표현방식에 있어서도 미리 약속된 특정의 기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제한이 있어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한 그 내용 자체는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작자의 지도책들에 있는 표현방식과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이 이전에 국내 및 일본에서 발행되었던 지도책들이 채택하였던 표현방식과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있어 동일·유사하거나 국내외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기호의 형태를 약간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 도움판례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지하철화상전송설비')

지하철 통신설비 중 화상전송설비에 대한 제안서 도면의 '저작물성'에 대해 법원은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동일한 기능을 하는 기계장치나 시스템의 연결 관계를 표현하는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그 장치 등을 구성하는 장비 등이 달라지는 경우 그 표현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작권법은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기술 구성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 표현에 대하여 동일한 기능을 달리 표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 도움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1. 선고 2005가단12610 판결('춘천시관광지도')

춘천시의 전경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관광지도와 관련하여 법원은 "의도적인 왜곡표현으로 다운타운 지역을 크게 나타내고, 다운타운 지역으로부터 원거리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명소들을 실제보다 가까운 거리에 배치함으로써 관광객으로 하여금 한눈에 관광명소를 볼 수 있도록 제작한 관광지도는 기존의 관광지도와 구별된다."라고 판시하며 관광지도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였다.

## 도움판례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다261981 판결('건축 설계도서의 저작물성')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같은 항 제8호에서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저작물로서, 해당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용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Q

## 14.
## 외국 도서를 번역한 경우 저의 번역물이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나요?

A

**번역 과정에서 창작성 있게 기여한 부분에 한하여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할 때는 독자적으로 창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의 저작물에 창작성을 부가하여 창작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한다.[19] 단, 기존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창작한 모든 작품이 2차적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려면 원저작물의 단순한 변경이나 사소한 가감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는 등 실질적 표현에 있어 상당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20]

---

19 저작권법 제5조.

20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컴퓨터용 음악편곡').

번역물 또한 번역 과정에서 창작성이 충분히 부가되었다면,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어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원저작물을 언어체계가 다른 나라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어휘와 구문의 선택 및 배열, 문장의 장단 및 서술의 순서, 원저작물에 대한 충실도, 문체, 어조 및 어감의 조절 등 번역자의 창의와 정신적 노력이 깃든 부분에 번역저작물의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21]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22]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새롭게 창작성이 부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참고로, 번역물 등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주어져 있다. 따라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고,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였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도움판례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

"번역저작물의 창작성은, 원저작물을 언어체계가 다른 나라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어휘와 구문의 선택 및 배열, 문장의 장단 및 서술의 순서, 원저작물에 대한 충실도, 문체, 어조 및 어감의 조절 등 번역자의 창의와 정신적 노력이 깃들은 부분에 있는 것이고, 그 번역저작물에 나타난 사건의 전개, 구체적인 줄거리, 등장인물의 성격과 상호관계, 배경설정 등은 경우에 따라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번역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번역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번역저작물과 대상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번역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21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
22 저작권법 제5조 2항.

## 도움판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8. 28. 선고 2013가합4997, 5006 판결

"이 사건 번역서에는 번역투 표현이 아닌 국어문법에 맞는 표현, 외래어(한문)가 아닌 우리말식 표현, 구어체 표현, 직역하지 아니하고 의역한 부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어휘와 구문의 선택 및 배열, 원저작물에 대한 충실도, 문체, 어조 등에 있어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번역저작물은 2차적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Q

## 15.
## 웹사이트에 제품을 홍보하는 상세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그 소재인 사진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편집저작물의 보호범위는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대한 창작적 표현이지 그 소재는 아니므로, 편집저작물의 소재가 다른 사람의 것이라면 소재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23]

예를 들어, 제품의 인터넷 판매를 위하여 제품 상세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하자. 상세페이지에는 제품 설명, 제품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글은 '어문저작물', 사진은 '사진저작물'로 각각 보호될 수 있고, 이러한 저작물(소재)을 선택·배열하여 만든 상세페이지는 '편집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 즉, 편집저작물로

23 저작권법 제2조 제18호.

보호되는 것은 사진, 글 등의 각 소재를 '선택·배열 또는 구성'한 형태이며, 그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편집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

여기서 저작 활동의 본질과 창작성은 '편집'에 있으므로 이용된 소재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어도 되고, 반드시 저작물일 필요도 없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여 편집저작물을 만들었더라도, 그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하고 배열하는 것에 제작자 나름의 창조적 개성을 발휘하였다면, 그 결과물은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편집저작물의 보호범위는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대한 창작적 표현이지 그 소재는 아니므로, 편집저작물의 소재가 다른 사람의 것이라면 소재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

## 도움판례

###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내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한다. 편집물에 포함된 소재 자체의 창작성과는 별개로 해당 편집물을 작성한 목적, 의도에 따른 독창적인 편집방침 내지 편집자의 학식과 경험 등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하였거나 그 취사·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넘어 나름의 편집방식으로 배열·구성된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편집방침은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독창성이 단순히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기능상의 유용성에 머무는 경우,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이 진부하거나 통상적인 편집방법에 의한 것이어서 최소한의 창작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동일 내지 유사한 목적의 편집물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같거나 유사한 자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편집방법에서도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Q

## 16.
## 의류에 이용된 패턴이나 장신구의 디자인도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되나요?

A

**그 디자인이 물품과 분리되어 독자성이 인정된다면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

저작권법은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이 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24] 라고 규정함으로써,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가능성'을 응용미술저작물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물품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나, 물품에서 동일한 형상(모양)으로 복제될 수 있는 부분은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가령 독특한 디자인의 손잡이를

24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가진 컵에서 그 손잡이의 디자인은 손잡이와 분리하여 실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손잡이라는 물품과 분리되지 않는다.

또한, 컵의 손잡이는 손을 이용하여 잡을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는 실용적인 측면에 의하여 표현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듯 물품과 결합해 분리되지 아니하며 기능의 제한을 받는 미적인 부분은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그러나 컵에 그려진 '캐릭터'나 '그림', '도형이나 그림으로 이루어진 로고' 등은 컵과 분리하여 이용이 가능한 독자적인 창작성이 있기에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산업상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창작된 응용미술의 경우, 그것이 상품과 구분되어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는 창작물에 해당하여야만 예외적으로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25] 그 물품과 분리되지 않고 기능의 제한을 받는 독특한 외관이나  장식은 디자인보호법으로의 보호는 가능할 수 있으나, '물품과 구분된 독자성(분리가능성)'을 요건으로 하는 저작권법상의 응용미술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26]

따라서 의류에 이용된 패턴[27]이나 장신구[28]의 디자인 등이 물품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만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

**2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1. 5. 25 선고 2000가합7289 판결('반짝이 곰'); 이 사건 '곰인형'의 경우는 산업상 대량 생산의 목적으로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으로서 원칙적으로 의장법에 의하여 보호하면 되고, 그 자체가 상품과 분리되어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26** 대법원 2013. 4. 24. 선고 2012다41410 판결('책표지 디자인'); 서적표지라는 실용적인 기능과 분리 인식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그 문자, 그림의 형태나 배열 등의 형식적 요소 자체만으로 하나의 미술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독자적인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표지·제호 디자인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응용미술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함.

**27**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히딩크 넥타이').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5노3421 판결('묵주반지').

## 도움판례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히딩크 넥타이')

월드컵 축구 대표팀 감독에게 선물한 넥타이 문양을 도용하여 이와 유사한 넥타이를 대량 생산·판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일명 '히딩크 넥타이'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도안이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 위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며 저작물성을 인정하였다.

## 도움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5노3421 판결('묵주반지')

묵주반지(십자무늬묵주반지와 장미계단묵주반지)의 복제물을 판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소송이 제기된 사안에서 법원은 "묵주반지 디자인, 즉 ① 위 각 묵주반지의 기본적인 형상이나 모양 및 그 구성요소와 배치(일단 묵주반지인지 돌림 묵주반지인지와 반지 가운데에 일정한 간격으로 1개의 십자가와 10개의 묵주알이 돌출되어 있는 것), ② 위 각 묵주반지에 돌출되어 있는 십자가의 문양 및 색채, ③ 위 각 묵주반지에 돌출되어 있는 10개의 묵주알의 형태 및 문양 그 어느 것 하나 위 ○○○의 '창작물'로서 위 각 묵주반지와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하며 저작물성을 부정하였다.

## 도움판례

### 수원지방법원 2000. 5. 4 선고 99노4546 판결('전기보온밥통')

전기보온밥통의 외부측면에 그려져 있는 튤립, 장미 등의 꽃무늬를 적절히 배열한 문양이 전기보온밥통의 외부 디자인으로서 이용된 사안에서 법원은 "응용미술저작물이 당초부터 상업적인 대량 생산에의 이용 또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경우에는 그 모두가 바로 저작권법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그 실용품의 기능과 물리적으로 혹은 개념적으로 분리되어 식별될 수 있는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만이 저작물로 보호된다 할 것인데, 전기보온밥통의 외부측면에 그려진 '꽃무늬문양'은 그 제작경위와 목적, 외관 및 기능상의 특성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전기보온밥통의 기능과 물리적으로 혹은 개념적으로 분리되어 식별될 수 있는 예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여 저작물성을 부정하였다.

Q

## 17.
## 제목, 단체의 명칭, 단어, 유행어, 광고문구, 명언 등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주 적은 수의 단어 조합으로 이루어진 단문 등은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다. 다만 글의 분량이 짧다고 하여 무조건 저작물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자 나름의 독자적인 개성이 표현되어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책이나 영화의 제목, 단체의 명칭 및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은 그 자체로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29] 이를 저작물로 인정하게 된다면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지나친 제약을 가하는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29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다90 판결(만화제호 '또복이'),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73 판결(상호 '크라운출판사'), 서울고등법원 1998. 7. 7. 선고 97나15229 판결(광고문구 '~눈으로 확인하세요'), 서울고등법원 2006. 11. 14.자 2006라503 결정(영화대사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 저작물성 부정.

그러나 글의 분량이 짧다고 하여 무조건 저작물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30] 시적 표현이나 노래 가사, 트윗글[31]과 같이 짧지만 그 표현에 있어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창작성'은 수준 높은 예술성을 의미하지 않으며, 그저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저작자 나름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면 족하다.[32] 따라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면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지만, 저작자만의 창조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다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관련 사례로서, 몇 년 전 ○○백화점이 지하 2층 상품 판매 공간에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문구를 네온사인으로 제작해 내걸었던 적이 있다. 원래 이 문구는 '1984 청춘집중-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로 발매된 음반에 쓰인 글이었다. 하급심이기는 하나, 법원은 "저작물은 저작자의 어떠한 개성이 창작행위에 나타나 있으면 충분하고 저작자의 개성이 창작행위에 나타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용어의 선택과 전체 구성의 궁리, 표현방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33]라고 밝히며 저작물성을 인정하였다.

저작물성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이지만, 짧은 글이라도 저작자 나름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었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표현한 글을 이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

**3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3. 18. 선고 2004가단31955 판결('불타는 방벽'); 이 사건에서 '제호'의 저작물성은 부정되었으나 법원은 '제호' 중 저작물의 기본 원칙인 "창작적 사상 또는 감정을 충분히 표현한 것"이라면 독립된 저작물로서 보호할 수 있다는 여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3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고정4449 판결('트윗글').

**32**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세탁학기술개론').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4. 선고 2017가소7712215 판결('청춘집중').

## 도움판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고정4449 판결('트윗글')

작가 이외수가 올린 트위터(twitter) 글에 대해 법원은 "일반적으로 트윗글은 140자 이내라는 제한이 있고 신변잡기적인 일상적 표현도 많으며, 문제가 된 이 사건 트윗글 중에도 문구가 짧고 의미가 단순한 것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러한 트윗글조차도 짧은 글귀 속에서 삶의 본질을 꿰뚫는 촌철살인의 표현이나 시대와 현실을 풍자하고 약자들의 아픔을 해학으로 풀어내는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각 글귀마다 특유의 함축적이면서도 역설적인 문체가 사용되어 그의 개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저작물성을 인정하였다.

## 도움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4. 선고 2017가소7712215 판결('청춘집중')

음반에 쓰여진 문장이 무단으로 이용된 사안에서 법원은 "'우리 조금 불안하더라도 인생에서 다시 없을 청년 시절을 충분히 만끽하고 즐기자'라는 사상이 표현되었다 할 것이고, 용어의 선택, 리듬감, 음절의 길이, 문장의 형태 등에 비추어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창작성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하였다.

Q

## 18.
## 방송 예능 프로그램과 유사한 내용으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도 되나요?

A

**두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방송프로그램의 포맷에 대한 가치가 부상하면서 이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사전적 의미로서의 '포맷'은 틀, 형식, 방식 등으로 해석된다. 대체로 방송프로그램의 포맷을 이루는 '개별적인 요소'들은 아이디어 영역에 해당하거나, 그 자체로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요소들의 창작성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그 구성요소의 선택이나 배열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어우러져 기존의 방송프로그램과는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이 드러난다면 방송프로그램의 포맷도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

관련하여, 2011년 SBS에서 방영된 방송프로그램 '짝'[34]을 모방한 '쨕(tvN)'이라는 방송프로그램과 '짝꿍 게이머 특집(넷마블)'이라는 홍보영상물이 제작되어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35]

이에 대해 법원은 "리얼리티 방송프로그램은 무대, 배경, 소품, 음악, 진행방법, 게임규칙 등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고, 이러한 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나 방침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됨으로써 다른 프로그램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리얼리티 방송프로그램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요소들 각각의 창작성 외에도, 이러한 개별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나 방침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됨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우러져 그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정도에 이르렀는지도 고려함이 타당하다."[36]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모든 방송프로그램의 포맷을 저작물로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방송프로그램의 '창작성'과 침해의 요건으로서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즉, 방송프로그램을 이루는 개별적인 요소(무대, 배경, 소품, 음악, 진행방법, 게임규칙 등)인 아이디어를 넘어, 그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에 있어 저작자만의 개성이 표현된 부분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창작적 표현 부분에 있어, 방송 포맷과 직접 제작한 유튜브 영상 간의 실질적 유사성이 드러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

**34** 일반인 남녀가 출연하여 서로의 짝을 찾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35**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짝'); tvN의 '쨕'은 프로그램의 성격이나 등장인물,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내용 및 그 구성 등에서 표현상 상당한 차이가 있어 침해가 부정되었고, 넷마블의 '짝꿍 게이머 특집' 홍보영상물에 있어서는 SBS '짝'의 구성요소의 선택과 배열에 관한 창작적 표현에 있어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었다.

**36**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짝').

## 도움판례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짝')

리얼리티 예능 TV프로그램 방식을 모방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영상물을 이루는 개별적인 요소들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미 사용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그 자체로만 보면 창작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나 원고 측의 축적된 방송 제작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프로그램의 성격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된 요소들만을 선택하여 나름대로의 편집 방침에 따라 배열한 원고 영상물은 이를 이루는 개별요소들의 창작성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구성요소의 선택이나 배열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어우러져 위에서 본 기존의 방송프로그램과는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Q

## 19.
## 인터넷에서 글자체(글꼴 도안)를 손으로 따라 그린 이미지로 포스터를 제작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A

**'글꼴(폰트, 서체) 파일' 없이 '글자체(글꼴 도안)'만 이용한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선 특정한 글자들의 모양을 의미하는 '글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다. 법원은 "글자체는 문자의 본래적 기능으로부터 독립되어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의 독자적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37]라며 글자체를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법원은 컴퓨터 등에서 글자를 나타내기 위해 글자체를 디지털화한 '글꼴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저작권법상의

37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38] 지금까지의 법원 판단에 따르면, 글꼴 파일의 소스코드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트(PostScript)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좌푯값과 좌푯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저작권법상의 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한다.[39]

따라서 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글꼴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여 결과물(문서, 동영상 등)을 제작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특정 글자체를 보고 직접 따라 쓰거나, 글자체가 포함된 내용(문서, 인터넷 화면, 포스터 이미지 등)을 캡처하여 그 이미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글꼴 파일을 직접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40]

한편 서예 작품의 경우, 법원은 "문자를 표현의 소재 내지 도구로 사용했으나 언어적 사상이나 의사의 전달이라는 본래의 기능보다는 시각적·형상적 사상의 표현에 주안점을 둔 것"[41]이라고 하며 저작물성을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글꼴 파일로 구현된 글자체가 아닌 서예 작품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참고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글꼴 파일에 대한 기본 정보와 이용 사례 등의 내용을 담은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http://www.copyright.or.kr)'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기관 누리집(홈페이지) '공유마당'을 통해 일정한 조건하에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안심글꼴파일 (https://gongu.copyright.or.kr/freeFontEvent.html)'을 제공하고 있다.

38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39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서체파일').
4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가단13294 판결('쌈'서체도안).
41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77 판결('Be the reds').

## 도움판례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서체도안의 저작권 등록신청에 대한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법원은 "우리 저작권법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인쇄용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서체도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하면서, "'산돌체모음', '안상수체모음', '윤체B', '공한체 및 한체모음' 등 서체도안들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할 문자인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삼아 인쇄기술에 의해 사상이나 정보 등을 전달한다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임이 분명하여,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으로는 그와 같은 서체도안은 신청서 및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한 심사만으로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라고 판시하였다.

## 도움판례

###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서체파일의 저작권 침해를 다툰 사안에서 법원은 "서체파일의 소스코드는 ① 그것이 비록 다른 응용프로그램의 도움 없이는 바로 실행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컴퓨터 내에서 특정한 모양의 서체의 윤곽선을 크기, 장평, 굵기, 기울기 등을 조절하여 반복적이고 편리하게 출력하도록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트(PostScript)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② 서체파일 제작 프로그램에서 마우스의 조작으로 서체의 모양을 가감하거나 수정하여 좌표값을 지정하고 이를 이동하거나 연결하여 저장함으로써, 제작자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의 알고리즘(algorithm)에 따라 프로그래밍 언어로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보통의 프로그램 제작과정과는 다르다 하여도,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작성되어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고 그 내용도 좌표값과 좌표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8. 12. 30. 법률 제5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다.

Q

## 20.
## 유명인을 대상으로 평전을 쓰면서 인물과 관련된 글이나 사진을 이용해도 되나요?

A

**유명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인물의 성명이나 사진 등을 이용하여 평전을 쓸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이 쓴 글이나 사진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유명인의 평전을 쓰는 것과 관련하여, 1) '해당 인물'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2) 타인이 찍은 사진 등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

1) '해당 인물'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공적 인물(야구선수)의 성명이나 사진 등을 이용하여 평전을 쓸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해당 인물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허용되고, 평전의 성질상 해당 인물의 성명, 보도용 사진, 주요 사건의 서술 및 저자의 의견을 담는 것도

가능하다."[42] 라며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부정한 바 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서 '브로마이드(대형사진)'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평전의 내용으로서 필요불가결한 부분이라 할 수 없고 그 자체만으로도 상업적으로 이용될 염려가 적지 않아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판결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평전의 저술·출판의 동기, 그 집필 자료와 사진 등의 수집 경위, 서적의 전체적 내용에서 나타나는 호의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적 인물의 성명과 사진이 과다하거나 부적절하게 이용될 경우 초상권,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즉, 서적의 내용으로 필요불가결한 자료의 활용이었는지, 사회통념상 인물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공공의 정당한 관심사를 초과하는 범위로 사생활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야 한다.

참고로 최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었는바, 해당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43]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면서,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 별개로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성명, 초상 등 식별표지,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추가하였다. 위 규정의 위반 행위는 금지청구[44], 손해배상청구[45] 및 시정권고[46]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다.[47]

---

**42** 서울고등법원 1998. 9. 29. 선고 98라35 결정('야구선수평전').
**4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
**44**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45**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46**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
**47**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1호.

다만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항 제1호 타목이 인정되기 위한 각 요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즉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갖는지 여부'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와 관련하여서는 선례의 축적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타목 문구만으로는 퍼블리시티권이, 예컨대 연예인과 소속사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퍼블리시티권을 제3자에게 라이선스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것인지, 존속기간이 있는 것인지 등 그 권리자나 보호범위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분명한 점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48]

2) 타인이 찍은 사진 등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이 쓴 글이나 사진을 평전에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일반원칙에 따라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고(故) 김수환 추기경 관련 서적을 출판하면서 평화방송 측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사진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49]

**도움판례**

**서울고등법원 1998. 9. 29. 선고 98라35 결정('야구선수 평전')**

유명 야구선수(박찬호)의 평전 관련 서적을 출판한 사안에서 법원은 "무릇 공적관심의 대상이 되는 저명한 인물 즉 공적인물(公的人物)에 대한 서술, 평가는 자유스러워야 하고,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 출판 및 표현의 자유의 내용이기도 하다. 다만 그것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제한을 받는다. 공적인물의 생애에 관한 서술과 그에 관한 평가를 담는 서적인 평전에서는 그 저작물의 성질상 대상자의 성명을 사용하고 대상자의  사진(보도용으로 촬영된 사진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을 게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생애에서의 주요 사건이 다루어지고, 그에 대한 저자의 의견이 더하여지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며, 그러한 평전의 저술은 그 대상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허용되어야 하고, 그 대상자가 되는 공적인물은 이를 수인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48 김지현, 염호준, 강태욱, 이재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데이터 및 퍼블리시티권 관련, 법률신문, 2021.11.19.

4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4가합14758 판결('김수환추기경 사진').

Q

## 21.
## 마스크를 쓴 사람과 뒷모습만 나온 사람에게도 초상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A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얼굴뿐만 아니라 외모 전체를 포함)이 드러난다면, 초상을 사용하기 위하여 초상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다.**

초상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다.

이러한 초상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민법 제750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 또한 초상권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50]

결론적으로, 초상권이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대한 권리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마스크를 쓴 사람과 뒷모습만 나온 사람의 경우에도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얼굴뿐만 아니라 외모 전체를 포함)이 드러난다면, 초상을 이용하기 위하여 초상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50 서울지방법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

Q

## 22.
## 저작권은 특허처럼 등록을 해야만 발생하나요? 등록을 하면 어떤 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저작권 등록을 해야만 권리가 발생하거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 등록을 했을 때 법률상 추정력, 대항력 등의 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의 발생에 어떠한 절차나 방식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으며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51] 따라서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만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 등록을 한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51 저작권법 제10조.

일정한 등록사항에 대하여 추정력·대항력 등의 법적 효력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에 따라 성명,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 공표연월일을 등록한 경우, 성명이 등록된 자가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받고, 등록된 연월일에 각각 저작물이 창작 또는 공표된 것으로 추정받는다. 이를 '추정력'이라고 한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할 때는 등록된 창작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52]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 변동(양도, 질권설정, 출판권 설정 등)이 있는 경우 이 사실을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가 권리 변동 사실을 부인할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변동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권리 변동 사실 및 출판권 설정 등을 등록하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게 된다.[53]

또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있어서도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권리자는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등록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과실에 의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법적 추정을 받는다.[54]

마지막으로, 저작권 등록이 된 경우, 실제 손해액이나 법원이 정한 손해액에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 등마다 1천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55]

결론적으로, 저작권 등록이 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률상 효력을 누릴 수 있으나,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저작자라는 사실, 저작물을 창작한 연월일, 저작물을 맨 처음 공표한 연월일, 저작권 침해 사실, 저작권 권리 변동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입증하여야 한다.

---

**52** 저작권법 제53조 제3항.
**53** 저작권법 제54조.
**54**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55** 저작권법 제125조의2.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누리집 : www.cros.or.kr

## 도움판례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849 판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으나 양도 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고소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록은 그 양도의 유효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여기서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때의 '제3자'란 당해 저작재산권 양도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경우 등 저작재산권 양도에 관한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에 한하고,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 도움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5노3421 판결('묵주반지')

미술저작물로 등록한 묵주반지를 복제·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법원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이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등록이 저작권의 발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묵주반지 디자인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함이 옳다."라고 판시하였다.

Q

## 22-1.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내가 거짓으로 등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허위등록 시,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등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2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용역계약에 의한 저작물이거나 공동저작자의 경우처럼 등록에 필요한 확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복잡·불편한 경우, 등록을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고자 하는 신청인이 종종 있다. 또한 수익배분 등을 위해 저작재산권을 양수하고도 저작권법 제54조 권리변동 등록이 아닌 제53조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허위등록이 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 도움판례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4806 판결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저작권등록부 허위등록죄는 저작권등록부의 기재 내용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주된 보호법익으로하며, 단순히 저작자 개인의 인격적, 재산적 이익만을 보호하는 규정은 아니다. 한편, 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달라져 저작물에 대한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저작자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은 저작권등록부의 중요한 기재 사항으로서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저작자의 성명 등의 허위등록에 있어서 진정한 저작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는 허위등록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라고 판시하였다.

Q

## 23.
## 저작권 보호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우리 저작권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까지를 저작권 보호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지만[56] 법에서 정한 보호기간이 경과하면 공유저작물(Public Domain)이 되어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특별한 규정[57]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까지를 저작권 보호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58]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59]

우리나라는 1957년 저작권법 제정 당시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56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57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 계속적간행물 그 밖의 출판권, 저작인접권,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음.

58 저작권법 제39조 제1항.

59 저작권법 제44조.

사후 30년'으로 정한 것을 시작으로, 1987년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통해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연장하였으며, 2011년 한·EU/한·미 FTA의 이행을 위한 법 개정을 통해 2013년(7.1.)부터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하였다. 다만, 부칙에 의해 위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소급하여 보호하지 않는다.[60]

위 개정사항을 모두 적용하여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기준시점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저작자의 경우는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들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1963년 이후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은 2013년 7월 1일 시행된 70년 보호기간이 적용되어 2033년 이후까지 보호를 받게 되므로, 이용 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 헤르만 헤세(1962년 사망) : 보호기간 : 1963. 1. 1. ~ 2012. 12. 31.
- 염상섭(1963년 사망) : 보호기간 : 1964. 1. 1. ~ 2033. 12. 31.

참고로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http://gongu.copyright.or.kr)에서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비롯하여 CCL저작물,[61] 공공저작물(KOGL),[62] 기증저작물[63] 등 일정 조건하에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다양한 저작물 (이미지, 영상, 음악, 어문, 폰트 등)들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저작물 이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60 저작권법(2011. 6. 30. 일부개정) 부칙 제2조 제1항.

61 Creative Commons License(자유이용허락표시), 저작(권)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표시한 저작물.

62 공공저작물(KOGL), 한국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라이선스(Korea Open Govermment License).

63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다른 이들이 저작권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 저작권을 기증한 저작물.

Q

## 23-1.
## 1950년대 신문에 실린 논평을 전시하고자 하는데, 해당 논평을 쓴 사람은 1970년대에 사망하였습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나요?

A

○ △ X

**업무상저작물이라면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지만, 개인저작물이라면 저작권 보호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

우선, 개별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종류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 개인저작물인지 업무상저작물인지에 따라 보호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64] 만약 논평을 쓴 사람이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라면, 해당 논평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65] 업무상저작물에

64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65 업무상저작물의 개념에 대하여, 본 사례집 Q24 참조.

해당한다면, 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보호된다.[66]

결론적으로, 해당 논평이 업무상저작물이라면 '공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표된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만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950년대에 신문에 실린(공표된) 논평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반면, 논평을 쓴 사람이 프리랜서 등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가 아니라면 개인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개인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저작물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된다.[67]

결론적으로, 해당 논평이 개인저작물이라면 '저작자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의 경우에만 보호기간이 만료된 것이므로, 저작자가 1970년대에 사망한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66 저작권법 제41조.
67 저작권법 제39조 제1항.

Q

## 23-2.
## 공동저자가 집필한 책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보호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므로,[68]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시점이 1962년 12월 31일 이전이라면,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68 저작권법 제39조 제2항.

Q

## 23-3.
## 옛날 영화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A

**영상저작물(영화)의 저작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영상저작물(영화)의 저작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69] 따라서 공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표된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만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 또는 음악 등의 저작물은 별개의 저작물로 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69 저작권법 제42조.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 저작권의 보호기간 |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

Q

### 23-4.
### 옛날 사진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A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사진의 경우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고, 1977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된 사진의 경우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 저작권이 보호되므로 아직 저작권 보호기간이 남아 있다.**

사진저작물의 경우, 1957년 저작권법상 보호기간은 처음 발행[70]한 해의 다음 해부터 1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86년 법이 개정되면서 저작자(사진을 촬영한 자) 사후 50년간 존속하게 되었다.

다만, 동법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된 것에 따라,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사진의 경우에는 1986년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연도인 1987년 이전에 보호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호기간 연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70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것으로 볼 수 있다.[71]

결론적으로,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사진이라면 보호기간이 만료된 사진으로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그 이후에 발행된 사진이라면 해당 사진의 저작자(촬영한 자)의 사망연도에 따라 보호기간이 다르게 기산된다.

71 다만, 1957년법상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 중에 삽입된 사진으로서 특히 그 저작물을 위하여 저작된 경우' 그 사진저작권이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에 속하도록 하고, 그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과 동일한 기간 존속하도록 했던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동법 제36조 참고).

## 저작권의 보호기간 |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Q

### 23-5.
### 클래식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클래식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자유이용할 수 있나요?

A

○ △ X

**창작자의 저작권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 2차적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보호기간 만료 여부도 살펴야 보아야 한다.**

작사·작곡자는 음악저작물을 실질적으로 창작한 저작자로서 '저작권'이 부여되고,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한 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데 기여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는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로서 '저작인접권'이 부여되고 있다. 또한 편곡을 한 경우, 새로운 창작성을 부여한 편곡이라면 편곡자에게 '2차적저작물(편곡)에 대한 저작권'도 별도로 인정된다.

따라서 작사·작곡자의 저작권뿐만 아니라,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편곡자의 저작권에 대한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도 모두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1) 베토벤(1827년 사망)의 곡을 2022년에 다시 '악보 그대로' 연주하고 녹음한 음반을

이용하고자 하면, 곡에 대한 저작권 보호기간은 만료되었지만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은 아직 남아 있으므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72]

2) 베토벤(1827년 사망)의 곡을 2022년에 다시 '창작성을 부여하여 편곡한 버전을' 연주하고 녹음한 음반을 이용하고자 하면, 곡에 대한 저작권 보호기간은 만료되었지만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편곡 부분에 대한 저작권은 아직 남아 있으므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및 편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72 저작권법 제86조 ②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방송의 경우에는 50년)간 존속한다.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다만,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 때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다만,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2025

# 저작권 상담 사례집

# 저작자
# (저작권의 귀속)

Q

## 24. 저작권은 최초에 누가 가지게 되나요?

A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저작자)에게 최초로 귀속된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인 저작자에게 최초로 귀속되며,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공표권, 동일성유지권)을 가진다.

단, 예외적으로 법인·단체 등에 소속된 자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라면 그 저작권은 법인·단체가 갖는다.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을 말하고,[73] 법인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이 된다.[74]

---

**73**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74** 저작권법 제9조.

## 공동저작자

Q

### 25.
### 대학 조별 과제로 영상을 제작했는데, 누가 저작자가 되나요?

A

**창작적 표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은 모두 공동저작자가 될 수 있다.**

저작물의 저작자는 1인일 수도 있지만, 다수가 모여 저작물을 창작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처럼 공동 창작의 의사를 가진 2인 이상이 저작물을 창작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이라 하고,[75] 이러한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를 '공동저작자'라 한다.

그러나 창작에 기여한 모두가 공동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동기 부여, 자료 제공, 오류 수정 및 창작에 필요한 부수적인 도움을 준 것을 넘어 해당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에 기여한 사람만이 공동저작자에 해당하게 된다.

공동저작물은 2명 이상의 창작성 있는 표현이 분리 불가능하게 얽혀 있으므로 전원의

75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합의에 의해서만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행사(이용 허락, 양도, 질권설정 등)할 수 있으며[76] 만약 공동저작자가 저작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경우 이는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행사방법 위반에 해당한다.[77] 그러나 공동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저작권 행사에 대한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78]

위와 같이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의 행사는 전원의 합의를 요구하는 반면,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전원의 합의 없이 단독으로도 권리구제 행위를 할 수 있다.[79]

76 저작권법 제15조 1항, 제48조 1항.
77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78 저작권법 제15조 1항, 제48조 1항.
79 저작권법 제129조.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Q

### 26.
### 회사에서 업무상 제작한 설계도를 퇴사 후에도 이용할 수 있나요?

A

**설계도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면 회사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저작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창작한 사람이 아닌 그를 고용한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이 저작자가 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로 정의하고,[80]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80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되도록 하고 있다.[81]

저작권법이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예외 규정을 둔 취지는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는 법인 등에서 각자가 창작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창작환경을 고려한 것으로써, 권리관계를 단순화하여 저작물의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라는 저작권법상 일반원칙을 고려하여, 저작권법 제9조를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즉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 법인 등의 사용자가 저작물 작성에 대해 기획하고 그 직원 등에게 지시하여 저작물을 작성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저작물 작성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법인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위탁·도급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작성된 저작물은 작성자의 주어진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업무상 요구된 것이 아니라면 저작자는 그 작성자가 된다.

넷째, 법인 등의 이름으로 공표되어야 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는 공표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다섯째,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어야 한다.

만약 완성된 저작물이 위 요건들을 모두 갖추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게 되면,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고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은 원시적으로 법인 등에 귀속된다. 다만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개인이 저작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작성한 설계도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면, 퇴사 이후 업무상 제작한 설계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다.

81 저작권법 제9조.

Q

## 27.
## 공연기획사로부터 발레안무가 및 예술감독으로 제안을 받아 발레 안무를 완성한 경우 발레 작품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A

**저작권은 원시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도급계약을 통해 안무를 만들었다면 안무를 창작한 자(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다.**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82] 즉 저작물 창작을 위한 동기 부여, 자료 제공, 단순 오류 수정 및 창작에 필요한 비용 등을 제공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만이 저작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위탁자(공연기획사)가 발레안무가 및 예술감독의 역할을 제안하여 수탁자(발레안무가)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위탁자(공연기획사)는 저작자(창작자)가 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을 통해 저작물을 만든 경우, 실질적으로 창작을 한 수탁자가 저작자가 되고, 위탁자는 계약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 또는 결과물에

82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대한 소유권만을 가진다. 따라서 위탁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해야 한다면, 수탁자와 구체적인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 양도계약 또는 이용허락계약 등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위탁기관이 전적으로 저작물에 대해 기획·투자를 하면서 외부 업체의 인력만을 이용해 저작물을 개발·납품받아 위탁기관의 명의로 공표한다면, 그 위탁기관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로 볼 여지도 있다.[83]

**도움판례**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60590 판결**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에 관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4. 1. 5. 법률 제4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규정은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그에게 개발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납품하여 결국 주문자의 명의로 공표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7조를 준용하여 주문자를 프로그램저작자로 볼 수 있다."

83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60590 판결.

## 도움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8. 선고 2015가합553551 판결

"원고가 작성한 위 급여대장은 추후에 회계처리, 세금신고 등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4,430여만 원은 공연 준비 비용, 공연수익 배분금, 원고 아들의 발레 레슨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지적하는 110만 원씩 지급된 부분도 그 지급 횟수와 시기 등을 비추어 볼 때 피고에 대한 월 급여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운영하는 ○○○예술매니지먼트는 별도의 사무실과 일상적인 업무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원고가 공연을 섭외하여 그 일정이 잡히면 피고가 무용수와 스텝진을 구성하여 공연을 한 후 원·피고 사이에 그 비용과 수익 등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지는 식으로 공연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가 없고, 원·피고가 2014년경 더 이상 공연업무를 같이 하지 않게 될 무렵에도 퇴직금 지급 등 고용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업무상저작물 주장은 이유 없다."

##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영상저작물 특례규정)

Q

### 28.
### 학창시절 출연하여 찍은 학교 홍보 영상이 지금도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는데 저작권법을 근거로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A

○ △ X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한 실연자의 경우,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및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해당 영상이 이용되고 있다면, 저작권법을 근거로 이용 중지 요청을 하기는 어렵다.**

영화 등 영상저작물은 종합예술의 한 형태로서, 영상 제작에는 어문(소설, 각본 등),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저작물들이 이용되며, 여러 분야의 감독(의상, 무대, 미술, 촬영 등)과 연출자, 실연자 등이 공동으로 영상물 제작에 참여한다.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영상저작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제작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영상저작물의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00조 제3항에 따르면,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경우,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및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영상저작물을 이용한다면 저작인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학창시절 제작된 학교 홍보 영상이 위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제작되어 이용되고 있다면, 저작권법을 근거로 이용 중지 요청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작권법에 규정된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99조(저작물의 영상화) ①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2.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3.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4.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5.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
6.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②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①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제101조(영상제작자의 권리) ①영상제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받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공개상영·방송·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실연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받는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도움판례

###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도2856 판결('가라오케용 LD음반')

법원은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저작물 중에서 특정 배우들의 실연 장면만을 모아 가라오케용 엘디(LD)음반을 제작하는 것은, 그 영상저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새로운 영상저작물을 제작하는 데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영화배우들의 실연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엘디(LD)음반에 녹화하는 권리는 구 저작권법(1994. 1. 7. 법률 제4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항에 의하여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되는 권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다.

2025

# 저작권 상담 사례집

# 저작권의 내용

- 저작인격권
- 저작재산권

Q

## 29.
##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등이 있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는 권리로서, 창작과 동시에 저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 권리인 '저작인격권'과 저작물에 대한 경제적 권리인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먼저, 저작인격권은 양도·포기가 불가능한 권리인 '일신전속권'으로서, 저작인격권의 종류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다. '공표권'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이고,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이며,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이다.

저작재산권에는 저작물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할 권리인

‘복제권’,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공중에 공개할 권리인 ‘공연권’, 저작물 등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인 ‘공중송신권’,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인 ‘전시권’,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할 권리인 ‘배포권’, 상업용 음반이나 상업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인 ‘대여권’,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부여하는 이외에도,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하지는 않지만, 예능적 표현, 음반의 제작, 방송 중계 등의 방법으로 저작자와 저작물 수요자들을 매개하여 수요자들이 저작물을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를 ‘저작인접권자’라고 하여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Q

## 30.
## 아직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그림의 원본을 직접 그린 지인에게 선물 받았는데, 호텔 로비에 전시해도 되나요?

A

**미공표 미술저작물의 원본을 양도받아서, 원본을 전시한 것이라면 가능하다.**

일단 저작물이 공표되면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이 투영된 저작물은 사회적 평가의 대상이 되고, 이 사회적 평가는 곧바로 저작자에게 귀속된다. 이에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작물이 공표되지 않도록 저작자에게 공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공표권은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저작인격권 중 하나이며, 저작물의 공표 여부와 공표 시기, 공표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84] 여기서 공표라 함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84 저작권법 제11조 제1항 참조.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85]

공표권은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 즉 미공표 저작물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만약 미공표 저작물을 허락 없이 공표하였다면 공표권을 침해한 것이 될 수 있다. 다만,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86]

따라서 공표되지 않은 그림 원본을 지인에게 선물 받은 경우라면, 저작자인 지인으로부터 저작물을 공표하지 말라는 별도의 요청을 받지 않은 한,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하여 공표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참고로, 저작권법은 아래와 같이 미공표 저작물을 허락 없이 공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1.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 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87]
2.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88]
3.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89]
4.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도서관 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90]

---

**85**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86** 저작권법 제11조 제3항.
**87** 저작권법 제11조 제2항.
**88** 저작권법 제11조 제3항.
**89** 저작권법 제11조 제4항.
**90** 저작권법 제11조 제5항.

Q

## 31.
## 필명으로 활동하는 소설가의 작품에 작가의 본명을 표기해도 되나요?

A

X

**저작자가 필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에 임의로 본명을 표기하는 것은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필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재산적 권리로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고,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이에 해당한다.

저작인격권 가운데 성명표시권은 저작물 내용에 대한 책임의 귀속을 명백히 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평가를 저작자에게 귀속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저작자명의 표시 여부 및 표시할 경우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저작자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물의 이용자는 저작자가 표시한 바대로 표기를 해주어야 한다. 만일 저작자가 무명이나 필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에 임의로 본명을 표기한다면 이 또한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91]. 예를 들어, 호텔이나 백화점 및 TV 방송 프로그램 중간에 배경음악이 이용되는 경우와 같이 작사·작곡자를 일일이 표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라면 생략되어도 저작인격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같은 음악저작물을 이용했음에도 저작자를 표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여 성명표시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도 있다. 최근 프로야구 응원가 관련 분쟁 사안에서는 "최소한 정규시즌의 홈경기에서는 선수입장 시 각 선수별로 정해진 응원가를 부를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해당 상황에 맞게 전광판에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한다거나, 야구경기가 종료되고 난 후 해당 경기에 사용되었던 응원가 저작자의 성명을 전광판에 한꺼번에 열거하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등 얼마든지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 점, 아울러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채널에서 응원가 영상을 제공할 때 해당 응원가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점"[92] 등을 고려하여 성명표시권 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창작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서 저작재산권과 달리 양도나 상속도 할 수 없고 저작자가 사망하면 저작인격권은 소멸하게 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도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는 이용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해 저작자의 유족 등이 침해정지나 명예 회복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

**91**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단서.

**9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19나2016985 판결('야구장 응원가').

## 도움판례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269 판결

국어 교과서에 학생작품을 실으면서 임의로 이름을 고친 사안에서 법원은 "저작자는 저작물에 관한 재산적 권리에 관계없이 또한 그 권리 이전 후에 있어서도 그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권리가 있고 이는 저작자가 저작자로서의 인격권에 터 잡아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므로 저작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그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가공의 이름을 표시하여 그 저작물을 무단복제한 자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귀속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 도움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19나2016985 판결('야구장 응원가')

야구장에서 응원가를 부를 때 음악저작자들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법원은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단서), 단순히 응원가를 부르는 상황이 즉흥적일 수 있고 응원가를 부르는 시간이 짧다거나, 전광판에 성명 표시가 어렵다는 사정,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중략) 정규시즌 중 피고의 홈구장 전광판을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최소한 정규시즌의 홈경기에서는 선수입장 시 각 선수별로 정해진 응원가를 부를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해당 상황에 맞게 전광판에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한다거나, 야구경기가 종료되고 난 후 해당 경기에 사용되었던 응원가 저작자의 성명을 전광판에 한꺼번에 열거하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등 얼마든지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아울러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채널에서 응원가 영상을 제공할 때 해당 응원가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작곡가들에게 성명표시권 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Q

## 32.
## 작가에게 의뢰하여 조형물을 만들어 설치했는데, 의뢰인이 작가와 협의 없이 조형물을 폐기해도 되나요?

A

**소유권자가 저작물을 폐기하거나 파괴하는 경우에 저작권(동일성유지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저작권과는 별개로 헌법상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은 저작권 분쟁이 많은 권리 가운데 하나이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로서[93]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반영된 저작물이 타인(소유권자를 포함)에 의해 무단으로 수정·변경되지 않도록 하여, 저작물에 담긴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부여된 권리이다.

93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이에 따라, 만약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 제호 등의 변경으로 인해 저작물에 담긴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왜곡된다면, 이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저작물이 무단으로 '수정·변경'되는 경우에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나, 최근에는 소유권자가 저작물을 무단으로 '폐기·파괴'하는 경우에도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인정된 외국의 사례들이 존재하나, 우리 법원은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인정하는 데 있어 소극적이다. 법원은 소유권자가 저작물을 폐기하거나 파괴하는 경우에 동일성유지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저작권과는 별개로 헌법상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94]

## 도움판례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도라산 벽화')

원고의 벽화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피고가 벽화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고 파괴한 것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벽화를 떼어내 소각하여 폐기한 것은 벽화 소유권자로서의 권능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벽화를 철거하는 과정에서의 손상 절단 등의 행위도 궁극적으로 폐기행위가 저작인격권 침해로 볼 수 없는 이상 폐기행위에 흡수되어 별도의 저작인격권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2심). 그러나 작가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가 위와 같은 저작권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저작물의 단순한 변경을 넘어서 폐기행위로 인하여 저작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저작자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94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도라산 벽화').

Q

## 33.
## 유명 그림을 트레이싱해서 SNS에 게시해도 되나요?

A

**트레이싱의 대상이 저작물이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특정 인물의 초상이 이용된다면 초상권 침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트레이싱과 관련된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최근만의 일은 아니다. 이미 만화(웹툰) 업계에서는 다른 만화가의 작품이나 사진 이미지의 일부 또는 전체를 트레이싱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논란이 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트레이싱'이란 그림이나 사진의 이미지를 그 윤곽선을 따라 그리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트레이싱은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상 복제 행위에 해당한다. 저작권법상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95]

여기서 '다시 제작'하는 행위는 반드시 원작과 표현의 내용이나 형식이 완전히 동일할 필요는 없고 실질적으로 동일하면 된다. 즉, 암호문을 보통 문장으로 고치거나 만화 속 캐릭터를 봉제 인형으로 제작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하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창작적 행위가 더해진다면 단순 복제를 넘어 2차적저작물 작성에도 해당할 수 있다.

사안에서 트레이싱의 대상이 저작물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겠지만, 트레이싱의 대상이 저작물이라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트레이싱하여 SNS에 게시하는 것은 복제권, 전송권 등의 침해가 될 수 있다.

또한, 인물의 초상이 담긴 사진을 트레이싱 하는 경우에는 초상 관련 분쟁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 이름, 이미지 등이 허락 없이 촬영되거나 이용되지 않을 권리이다. 만일 해당 인물의 인격적 권리를 훼손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96]

---

**95**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96**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본 사례집 Q20 참조.

Q

## 34.
## 5~6명 정도 소수의 동아리원들과 동아리실에서 연극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침해인가요?

A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된 공간에서 서로 친밀한 소수의 사람들이 저작물을 감상하거나 직접 실연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 혹은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공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5~6명 정도 소수의 동아리원들과 동아리실에서 연극연습을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 보기 어렵다.**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97]

공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중에게 공개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97 저작권법 제2조 제3호.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의미한다.[98]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이라 함은 그 개성 또는 특성이나 상호 간의 관계 등을 묻지 않은 2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99]

저작권법상 공중에는 불특정 다수인뿐만 아니라 특정 다수인도 포함되기 때문에, 상호관계가 있는 집단이라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다수라면 공중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내 운동회에서의 공연과 같이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저작물 공개도 공중을 대상으로 한 공연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된 공간에서 서로 친밀한 소수의 사람들이 저작물을 감상하거나 직접 실연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 혹은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공연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5~6명 정도 소수의 동아리원들과 동아리실에서 연극연습을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참고로, 공중을 대상으로 저작물 등을 공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필요할 것이나,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인 저작권법 제29조(비영리공연)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00]

98 저작권법 제2조 제32호.
99 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09 판결.
100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중 비영리공연에 대하여, 본 사례집 Q55~57 참조.

Q

## 35.
## 버스킹 공연을 해도 되나요?
## 제가 버스킹 공연한 영상을 SNS에 올려도 되나요?

A

**버스킹 공연은 가능하지만, 이를 SNS에 올리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용 허락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버스킹은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개하는 형태의 이용으로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한다.[101] 따라서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1) 공표된 저작물을,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3)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며, 4)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도 공연, 즉 버스킹이 가능하다.

101 저작권법 제2조 제3호

그러나 버스킹 공연을 촬영하여 인터넷상에 업로드하는 것은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공중송신'에 해당한다.[102] 이러한 공중송신 행위는 공연권만을 제한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공연을 촬영하여 인터넷상에 게시할 때는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작사가·작곡가)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103]

덧붙여, MR과 같은 음반을 이용해 진행된 버스킹 영상을 인터넷상에 게시할 때는,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음반제작자의 복제권[104] 및 전송권[105]에 대한 이용 허락도 함께 받아야 한다.

102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103 음악 저작권위탁관리업체에 대하여, 본 사례집 p.28 저작권위탁관리업 표 참조.
104 저작권법 제78조.
105 저작권법 제81조.

Q

## 35-1.
## 우리 회사가 소개된 신문 기사들을 모아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가요?

A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신문기사 내용을 직접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링크만을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작권법상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106]를 제외하고, 기자의 창작적 표현이 드러난 신문 기사 등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사를 다룬 공개된 신문 기사라고 하더라도, 신문사 등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복제하여 누리집(홈페이지)이나 각종 SNS 등에 옮겨 게시하는 것은 복제권,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106 저작권법 제7조 제5호.

한편, 인터넷 '링크'는 일반적으로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deep link),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등으로 구분된다.[107] 이러한 링크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108] 따라서 저작권자가 직접 게시한 신문 기사의 링크만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프레이밍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저작권에 기한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불법복제물을 대상으로 하는 링크 행위 또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방조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109]

**도움판례**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2757 판결('인터넷 링크')**

링크 전반에 대해 법원은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다.

107 단순 링크(누리집 초기화면으로 이동), 직접 링크(원하는 상세정보페이지로 이동), 프레이밍 링크(링크된 자료가 내 누리집의 다른 프레임에서 보이도록 함), 임베디드 링크(링크된 음악이나 동영상 등이 내 누리집에서 직접 실행되도록 구현함).

108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0637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2757 판결('인터넷 링크').

109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판결(전원합의체).

## 도움판례

### 서울지방법원 2001. 12. 7. 선고 2000가합54067 판결('지도검색 링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도검색 서비스 일체를 프레이밍 링크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저작권자로서 전자지도 등 데이터베이스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로 하여금 위 전자지도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여, 원고의 저작권에 기한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므로, 이는 원고의 이 사건 전자지도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타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Q

## 35-2.
## 불법 사이트에 링크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이트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영리적·계속적으로 링크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

링크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링크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저작물 이용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110]

110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2757 판결.

그러나 2021년 9월 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이트의 링크를 제공하여 링크 행위자의 링크가 없었더라면 정범이 게시한 저작권 침해물을 발견할 수 없었던 공중의 구성원까지 그 링크를 통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쉽게 저작권 침해물에 접근할 수 있게 되므로, 링크 행위로 말미암아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실행행위가 용이하게 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가 강화·증대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단순히 공중송신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방조범 성립에서 요구되는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111] 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

비록 링크는 인터넷 공간의 정보를 연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기는 하나, 적법하게 저작물이 이용되고 있는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이트의 링크를 무분별하게 제공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

**111**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판결(전원합의체).

Q

## 36.
## 서점에서 구매한 책을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해도 되나요?

A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책을 구매하였다면, 이를 재판매하거나 대여해 주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배포'는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112] 즉,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팔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배포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배포권'이다.

저작권법 제20조는 저작권자에게 배포권을 부여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다만, 저작물의

112 저작권법 제2조 제23호.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배포권을 제한하고 있다. 즉,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일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최초 판매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다시 판매되거나 대여되는 것에 대하여는 배포권으로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배포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저작권자가 해당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한 이후에도 계속 배포권을 인정하게 되면, 원본이나 복제물이 거래되는 경우마다 매번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거래에 혼잡을 초래하며,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이른바 '권리소진의 원칙(최초 판매의 원칙)'이라 한다.

따라서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이미 저작권자의 허락하에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 구매자가 이를 다시 배포하였을 뿐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 불법 복제물의 경우**

출판사가 저작권자로부터 출판권을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책을 무단으로 출판하는 등 불법복제물일 경우,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구매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책을 공중에게 재판매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저작재산권 | 대여권 - 게임 CD 대여

Q

# 37.
# 구매한 게임 CD를 돈을 받고 빌려주는 대여점을 운영해도 되나요?

A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과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저작권법 제20조 단서(권리소진의 원칙)에 따라,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이후에는 제한 없이 이를 재판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제21조는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자의 대여권을 인정하고 있다. 저작물을 대량으로 대여하는 대여업이 발전하면서 저작자의 권리를 위협하게 되자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2006년에 권리소진의

원칙을 일부 제한하는 '대여권'이 신설된 것이다.

이에 따라 1)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2) 음반이나 프로그램을, 3)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필요하다. 따라서 구매한 게임 프로그램의 CD를 돈을 받고 빌려주는 대여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필요한 것이다.

Q

## 37-1.
## 공공도서관에서 구입한 DVD를 도서관 이용자(회원)에게 대여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되나요?

A

○ △ X

**도서관에서 정식 유통경로를 통해 구입한 DVD나 CD 등의 자료를 이용자에게 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20조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권리를 저작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배포권'이라 한다. 그러나 같은 조문에는 예외적으로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단서 조항은 일명 '권리소진' 이론을 반영한 것으로, 저작권자가 적법하게 판매한 복제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배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도서관이 정식 유통경로를 통해 구입한 DVD나 CD 등의 자료는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그 자료에 대해 다시 이용자에게 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저작권법 제21조는 저작물 중에서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과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에게 '대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한 대여행위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주로 비디오 대여점, 게임방, DVD방 등과 같이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영리시설에서 문제되는 조항이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공익적 목적의 문화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되므로 영리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서관이 음반이나 프로그램을 대출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1조에서 규제하는 대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도서관이 적법하게 구입한 비도서자료를 회원에게 대출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배포권이나 대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이는 저작물의 최초 판매 이후 저작재산권자의 통제 범위를 제한하는 권리소진 원칙과, 대여권의 적용 범위가 영리 목적에 한정된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음악 CD, 영화 DVD, 게임 CD 등 비도서자료에 대해서도 일반 도서와 마찬가지로 적법하게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상 이를 제약할 명확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Q

## 38.
## 시중에 판매되는 학습교재를 이용하여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고, 유튜브에 게시해도 되나요?

A

○ △ X

**동영상 강의 내용이 기존 학습교재의 기본적인 구성과 체계, 지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학습교재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한다.**

온라인 학습이 대세인 요즘, 다양한 분야에서 동영상 강의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강의 제작에 있어 강사 본인만의 콘텐츠로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에 출판된 학습교재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기본적으로 온라인 강의는 공간적인 제약이 없고 반복적으로 시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특정 출판사의 학습교재를 활용하여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고자 한다면, 저작권자와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기존 학습교재를 기초로 하여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기는 하였으나, 기존 학습교재를 부수적으로 인용하는 정도에 그치거나 표현상의

창작성을 감득(感得)할 수 없어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기존 학습교재를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강사 나름의 요령과 방식에 따라 독창적인 표현방법을 부가하여 설명한 경우라면, 강의 동영상 그 자체가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을까?

기존 학습교재와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면서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다면, 새로운 저작물, 즉 2차적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2차적저작물작성권) 자체가 저작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므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1) 동영상 강의 내용이 기존 학습교재의 기본적인 구성과 체계, 지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단순히 내용 일부를 수정·변경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가 될 것이고, 2) 기존 학습교재와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면서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113]

1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2가합541175 판결('메가스터디동영상강의').

## 도움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2가합541175 판결 ('메가스터디동영상강의')

특정 교육 교재로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여 온라인에 게시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동영상 강의에 수강생들이 각종 시험에 대비하여 손쉽게 지문의 내용을 이해·암기하거나 출제 가능한 문제의 풀이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강사 나름의 요령과 방식에 따라 지문 이외의 설명을 부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위 설명 부분의 경우 강사 나름의 독창적인 표현방법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동영상 강의는 기본적으로 피고 교재를 토대로 한 것으로서, 강사가 피고 교재의 일부 지문 및 문제 등을 그대로 낭독하거나 판서하면서 강의가 진행된다. 해당 강사의 창작적인 표현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국어 교과의 특성상 교과서 또는 문제집의 지문 자체가 중요한 내용이 되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동영상 강의의 목적, 수강생의 연령 등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동영상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과 진행 방식은 피고 교재의 기본적인 구성과 체계, 지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라고 판시하며 복제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2025

# 저작권 상담 사례집

# 저작재산권 양도 및 이용허락

## 저작물 이용 일반

Q

### 39.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저작권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저작재산권[114]을 가진다. 따라서 해당 이용이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이때, 타인의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법은 1)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2)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다.

1) 저작재산권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저작자의 필요에 따라 타인에게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상속 또한 가능하다.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반드시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복제권, 배포권만을 양도하거나 인쇄·출판할 권리만을 양도하는 등 저작물의 이용형태에 따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114 저작권법 제16조에서 제22조.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기 때문에 양도·상속·대여·포기 등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도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이용의 목적을 밝히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용 허락의 종류로는 단순 이용 허락, 독점적 이용 허락,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이 있으며, 만약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은 경우라도 허락받은 방법 및 조건 등을 지키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 혹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덧붙여, 저작물의 이용 허락은 유통 시 약관의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대표적인데, 이런 경우 라이선스 내용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영화 포스터 이용

Q

### 39-1.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는 영화제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때 영화포스터를 홍보목적으로 이용해도 되나요?

A

**영화 포스터의 경우,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

영화포스터를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고, 허락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용 허락을 받지 않거나 이용 허락범위에 맞지 않게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영화 포스터 안에는 그림과 사진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그림 등이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것이라면, 미술저작물[115]이 될 수 있으며, 포스터의

115 저작권법 제4조 제4호

사진이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사진이라면, 사진저작물[116]로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저작자가 포스터 제작 시 복수의 저작물이나 그 외 기타 자료 등을 창작적으로 선택, 배열 또는 구성하였을 경우 편집저작물[117]로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영화 포스터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할 때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고, 허락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용 허락을 받지 않거나 이용 허락범위에 맞지 않게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도움판례**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법원은 찜질방 내부를 찍은 사진과 관련하여 "그 촬영의 목적 자체가 피사체의 충실한 재현에 있다거나 촬영자의 고려 역시 피사체의 충실한 재현을 위한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행하여졌다고 할 수 없고, 광고대상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다고 한다면 사진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116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6호,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117 저작권법 제2조 제18호

## 음악저작물 이용

Q

### 39-2.

###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고 싶어서 캐럴을 틀려고 하는데, 저작권 문제 때문에 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카페에서 캐럴을 틀면 문제가 되나요?

A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으나, 커피 전문점의 경우 제외되므로,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서 재생해야 한다.**

커피 전문점에서 캐럴을 배경음악으로 재생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한다.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으나, 커피 전문점의 경우 제외되므로,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서 재생해야 한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으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저작재산권으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상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 제외)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제2조 제3호).

저작권법에서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9조 제2항).

위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장소는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이다. 따라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와 같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징수규정에서는 영업허가면적이 50㎡미만인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은 징수대상에서 제외하여 공연사용료를 면제하고 있다.

참고로 위원회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페이지에서 매장 음악 공연권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고, 위원회 공유마당에 공개되어 있는 캐럴 음원을 이용조건을 준수하여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저작재산권 양도와 이용 허락

Q

### 40.
###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사진을 구매한 경우, 제가 사진의 저작권자가 되나요?

A

**온라인 사이트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저작물을 받았더라도, 저작권 양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온라인 사이트에 비용을 지불하고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이 양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통상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저작물의 유통은 개인 소장 또는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위함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구매 사이트 내의 고지 사항이나 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이용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만약 이용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약관 위반으로 인한 민사상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참고로, 온라인을 통해 저작물의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제공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한다. 권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작물을 판매 및 제공하는 자에게

저작물을 구매하여 이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 저작재산권의 양속

Q

# 41. 사망한 작가의 사진 작품을 이용하려면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A

**저작재산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작가가 사망한 경우, 저작재산권을 양도 또는 상속받은 권리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자는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과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공표권, 동일성유지권)을 가진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기 때문에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118] 반면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이므로 타인에게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상속 또한 가능하다.[119]

118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참조.
119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참조.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상속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저작권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해 줄 수 있는 진정한 권리자를 확인하여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사망한 작가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이 양도된 사실 혹은 상속인에게 저작재산권이 상속된 사실 등을 바탕으로, 진정한 권리자를 찾아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다.

##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

Q

### 42.
### 책을 단독으로 유통하고 전자책도 출판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이용의 목적에 따라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으면 책 또는 전자책을 단독으로 출판할 수 있다.**

출판권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복제·배포)할 수 있는 권리이다.[120] 배타적발행권은 발행(복제·배포)에 전송권을 더하여 이용자가 취득하는 배타적 권리이며, 출판권은 제외한다.[121]

따라서 1) 종이책을 출판할 경우에는 출판권 설정계약, 2) 전자책을 출판할 경우에는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 3) 종이책과 전자책을 동시에 출판할 경우에는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

**120** 저작권법 제63조 제1항.
**121** 저작권법 제57조 제1항.

타인의 저작물을 출판하려면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용 허락과 다른 점이 있다.

이용 허락만을 받으면,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는 있으나 제3자가 저작물을 무단으로 출판하는 것까지 금지할 수는 없다. 반면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으면, 저작재산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배타적·독점적 권리(준물권적인 성격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제3자의 권리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 저작권자의 도움을 받거나 그의 권리를 대위할 필요 없이 직접 민형사상 권리구제행위를 할 수 있다. 민사상으로는 침해정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고, 형사상으로는 고소도 직접 가능하다.

한편, 저작권법은 출판권자 및 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또한 규정해 두고 있다.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경우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이를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122] 또한,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저작자에게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등의 의무가 따르게 된다.[123]

---

**122** 저작권법 제58조 제1항.

**123** 저작권법 제58조의2 참조.

## 2차적저작물 이용을 위한 이용 허락

Q

### 43.
### '해리포터' 영화를 연극으로 제작하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A

**원저작자(소설가)와 2차적저작물 작성자(영화제작자) 모두의 허락이 필요하다.**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하며, 저작권법은 이러한 2차적저작물이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124] 즉,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추가되어 실질적인 개변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소설을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나아가, 2차적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여 다시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저작물은 새로운 2차적저작물로서 보호받게 된다. 예를 들어, '소설(1)'을 원저작물로 하여 제작된 '영화(2)'를 다시 '연극(3)'으로 제작하였다면,

124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영화(2)'를 원저작물로 하여 제작한 '연극(3)'은 새로운 2차적저작물이자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는 범위는 원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이 추가된 부분에 한한다. 따라서 제3자가 2차적저작물을 무단이용했을 때, 2차적저작물 작성자는 원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이 추가된 부분에 한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2차적저작물인 '영화'를 원저작물로 하여 새로운 2차적저작물인 '연극'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인 '소설가'와 2차적저작물 작성자인 '영화제작자'의 허락이 모두 필요하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에서 수정·증감이 가해진 저작물이므로, 2차적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원저작물의 이용이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이다.

**도움판례**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2차적저작물의 요건)**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며,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도움판례**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2차적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2차적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저작물에 새롭게 부가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 영상 출연자의 저작물 이용

Q

### 44.
### TV 방송에 우리 회사가 나왔는데, 해당 방송영상을 회사 홍보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A

○ △ X

**영상제작자(방송사)의 허락 없이 영상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우리 회사가 TV에 나오거나 내가 인터뷰한 내용이 TV에 나올 경우, 이는 내가 참여한 부분이므로 당연히 이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단지 장소를 제공하거나 출연자로서 촬영에 협조한 것만으로 장소 제공자나 출연자에게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방송, 영화, 드라마 등과 같이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영상저작물의 경우 누구를 저작권자로 보아야 할까?

저작권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면,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125]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본인이 출연한 방송영상이라 할지라도 해당 방송영상의 저작권은 방송사 등 영상제작자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방송사 등 영상제작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다.

125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 뉴스 저작물 이용

Q

# 45.
# 뉴스를 요약하거나 캡처하여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A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가 아니라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 허락[126]을 받아야 하고, 그 이용 허락의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기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은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127]에 대하여 법원은 "정치계나 경제계의 동향,

126 저작권법 제46조.
127 저작권법 제7조 제5호

연예·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기상 정보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 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128]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단순 부고/인사/서훈, 날씨정보, 증권정보, 혹은 육하원칙에 입각한 사실 등 기자의 창작성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는 것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어떠한 사실을 보도함에 있어서 문장의 표현 등이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할 만하고 기자 나름대로 개성이 부여되어 있으면 보도기사라 하더라도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로서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용하려는 기사의 경우도 구체적인 문장표현 등에 있어서 창작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구분하여 보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구하고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는 행위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129]에 해당한다면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겠지만 인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만이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단순히 출처만 표시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책임이 면책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도움판례**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일간신문의 편집국장이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하여 신문에 게재한 사안에서, "복제한 기사 및 사진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128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129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본 사례집 Q55 참조.

## 저작권 계약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표준계약서

Q

### 46.
### 신인 작가로서 처음으로 출판사와 계약을 진행 중인데 참고할 만한 계약서가 있나요?

A

**문화·예술 관련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 그림책 '구름빵'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130]이 종지부를 찍었다. '구름빵' 이슈는 저작권 계약의 중요성을 알리고, 매절계약 및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특히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포함하는 양도계약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

매절계약이란, 일반적으로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인세가 아닌 원고료의 형태로 대가를 한꺼번에 지급하고, 향후 발생할 저작물 이용 수익을 독점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러나 매절계약은 정확한 법률용어가 아니므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기

1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7가합58860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 21. 선고 2019나2007820 판결('구름빵'); 2003년 당시 출판사와 있었던 저작권 양도계약이 불공정하다며 매절 계약 무효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 3심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결정, 2심 내용이 확정됨.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매절계약이나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구두 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 당사자들은 진정한 의사가 계약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용범위, 조건, 기간, 금액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계약서에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원은 기본적으로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해석하고 있으며,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 허락이 외부적으로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하고 있다.[131]

서면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예술인 복지법에는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경우 서면계약의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고,[132]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제재 수단도 마련하고 있다.[133]

결론적으로, 저작권 계약을 체결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는 문화·예술 관련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에서는 저작권 계약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계약체결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31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LP와 CD음반').
132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
133 예술인복지법 제18조 제1항 제1의2.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③ 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Q

## 47.
## 저작권자 미상인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어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정허락' 제도를 통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정허락' 제도를 두고 있다.[134]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노력'이란, ①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신청을 통하여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할 것, ②

134 저작권법 제50조 제1항.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 저작권대리중개업자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20일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③ 일반일간신문,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중 어느 하나에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 ④ 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검색할 것을 의미한다.[135]

결론적으로, 이용자는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또는 저작재산권자를 알고 있다면 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위와 같은 상당한 노력을 한 뒤, 법정허락 절차를 거쳐 승인을 얻은 후, 그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135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Q

## 48.
## 저작권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글꼴(폰트)이 있나요?

A

**무료 글꼴을 이용하거나 적법하게 구매한 유료 글꼴을 이용하더라도 이용조건을 확인하여, 이에 맞추어 이용해야 한다. 또한, 공유마당에서는 일정한 조건하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안심글꼴파일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를 통해 안전하게 글꼴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136]

따라서 유료 글꼴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인터넷에서

136 저작권법 제46조.

출처가 불명확한 글꼴 파일을 내려받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저작권자에 의해 비영리 목적의 개인에게만 허용된 무료 폰트 파일을 기업 또는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인쇄용에 한정된 것을 전자출판, 영상 자막, CI, BI 제작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용약관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에서는 글꼴 파일에 대한 기본 정보와 이용 사례 등의 내용을 담은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기관 누리집(홈페이지) 공유마당(www.gongu.copyright.or.kr)을 통해 일정한 조건하에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안심글꼴파일'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저작권 신탁

Q

### 49.
### 신탁단체에 신탁된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A

**신탁단체에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위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신탁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도 포함)을 업으로 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재산권자 등을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포괄적 대리는 제외) 또는 중개행위를 업으로 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나누어진다.[137]

'저작권신탁관리업'의 경우,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여 그 권리가 법률상 수탁자인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대외적으로 권리자로 인정되며 위탁자를 대신하여 저작물 이용을 허락할 수도 있다. 다만, 일신전속권인 저작인격권은 신탁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저작인격권은 대외적으로도

137 저작권법 제2조 제26호 및 제27호.

여전히 저작자에게 남아 있다.

따라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진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일반적으로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제호 또는 내용, 형식 등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저작인격권) 침해가 문제되므로 별도로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일부 저작재산권이 신탁되어 있지 않은데, 2차적저작물작성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별도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저작물을 위탁받은 자가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인 경우는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와는 달리 저작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저작물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의 대리 또는 중개를 거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대리 또는 중개가 강제적인 것은 아니므로 저작권대리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도 무방하다.

## 북한저작물의 이용

Q

### 50.
### 북한 작가의 작품을 이용할 때도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A

**북한 작가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 법령의 효력이 북한 지역에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국내 법원 또한 일관되게 북한의 저작물도 남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북한 저작자를 비롯하여 남한 상속인 모두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138] 다른 측면으로 살펴보면, 북한도 베른협약에 가입했으므로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과 동등하게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 결국 북한의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 이용하는 것이

138 서울지방법원 1996. 9. 12. 선고 96노3819 판결('이조실록번역본'),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7. 26. 선고 89카13692 결정('두만강').

기본원칙이다.

2006년 남북 간의 저작권 교류·협력 측면에서, 통일부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www.interkorea.org)'을 사회문화협력 사업자로 승인하고, 북측 저작권 대리·중개 사업을 담당하게 하였다.[139]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북한 저작물 이용과 관련된 창구로 알려져 있다.

정리하면,

1. 남한에 상속인(저작권자)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다.
2. 북한에 저작권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통하여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다.
3.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통해서도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법정허락을 받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140]

**도움판례**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7. 26. 선고 89카13692 결정('두만강')**

사망한 월북 작가 저작물의 무단이용 관련 분쟁 사안에서 법원은 "남북한이 서로 주권을 인정하고 국가로 승인하거나 또는 1개의 국가 내에서 서로 다른 법률체계를 상호인정하기로 하는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계약이 체결된 바 없는 이상, 우리 헌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저작권법이나 민법 등 모든 법령의 효력은 당연히 북한지역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월북 작가가 북한지역에 거주하면서 저작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우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가 사망한 경우에는 남한에 있는 그의 상속인이 이를 상속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139 최경수, "북한 저작권법 및 남북 간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저작권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110면.

140 법정허락에 대하여, 본 사례집 Q47 참조.

2025

# 저작권 상담 사례집

# 저작재산권의 제한

##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일반

Q

# 51.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A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범위 내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된 것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141] 저작물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감안하여 일정 범위 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141 저작권법 제1조.

**저작재산권 제한 관련 규정**

- 재판 등에서의 복제(제23조)
-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제24조)
-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제24조의2)
-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제27조)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및 방송(제29조)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제31조)
-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제32조)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제33조)
-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제33조의2)
-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및 녹화(제34조)
-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제35조의2)
- 부수적 복제 등(제35조의3)
-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제35조의4)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5)
- 번역 등에 의한 이용(제36조)
- 출처의 명시(제37조)
- 저작인접권의 제한(제87조)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제94조)
-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제101조의3)
- 프로그램코드역분석(제101조의4)
-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제101조의5)

다음으로,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142]

142 저작권법 제7조 참조.

##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 제24조

Q

### 52.
### 유튜브 영상 제작 시, 해외 각국 유명 정치가의 연설을 이용해도 되나요?

A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만을 편집하여 제작하지 않는 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정치적 연설 등은 이용이 가능하다.**

저작권법 기본원칙에 따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연설 등도 어문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강연이나 연설, 진술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은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43]

143 저작권법 제24조.

국민의 알권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치적 공개연설이나 법정·국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에 해당한다면 연설자나 진술자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쇄출판, 방송,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저작권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번역하여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만을 따로 모아 편집한다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1968년 사망)이 생전에 했던 정치적 연설만을 따로 편집하여 출판물 등을 제작하는 것은 제한되며, 필요하다면 그의 유족 등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다.

##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제24조의2

Q

### 53.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들은 자유롭게 이용해도 되나요?

A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저작재산권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공표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공공누리가 표시된 공공기관의 저작물도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공익을 목적으로 각종 홍보자료나 통계자료, 보고서 등을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러한 발간물 가운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공공저작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공공누리(KOGL)가 표시된 저작물도 보유기관에 개별허락을 받지 않고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의 단서[144]에 해당하는 저작물이라면 자유이용 대상이 아니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저작물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 누리집을 통해 저작권 정책 및 공공저작물 관련 이용 안내(공공누리 표시 등)를 확인한 후 그 조건에 따라 이용해야 하며, 만일 특정 저작물의 이용조건이 명확하지 않다면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한 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로 공공누리 누리집(https://www.kogl.or.kr/index.do)에서 공공저작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공공누리(KOGL)] 유형 안내

| 유형 | 표시방법 | 이용허락 범위 |
|---|---|---|
| 1 | | - 출처 표시<br>- 상업적 용도로 이용 가능<br>- 내용변경 등 2차적저작물작성 가능 |
| 2 | | - 출처 표시<br>- 비상업적 용도로만 이용 가능<br>- 내용변경 등 2차적저작물작성 가능 |
| 3 | | - 출처 표시<br>- 상업적 용도로 이용 가능<br>- 내용변경 등 2차적저작물작성 불가 |
| 4 | | - 출처 표시<br>- 비상업적 용도로만 이용 가능<br>- 내용변경 등 2차적저작물작성 불가 |

144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단서.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제111조까지 "위원회"라 한 다)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제25조

Q

### 54.
### 학교의 온라인 수업을 위해 교과서나 인터넷에 공개된 다양한 자료들을 일부 활용해도 되나요?

A

**학교의 수업을 위해서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수업의 경우에는 기술적 보호조치(접근제한 및 복제방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경고문구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2020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는 학교 교육 현장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다. 온라인 개학 및 비대면 원격 수업 등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갑작스러운 수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저작물 이용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디지털 환경에서 진행되는 원격 수업의 특성상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이 용이하게 되면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저작권법 제25조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복제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 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 등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란,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는 수업 목적 범위 내에서 교과서 내 자료, 출판사가 제공하는 수업지원 자료, EBS 영상학습 자료, 저작권자에 의해 인터넷에 공개된 학습 자료 등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원격 수업에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사진이나 그림을 이용하는 경우와 같이 저작물 전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부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위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45]

한편, 원격 수업은 동일한 교과목의 수강을 신청한 학생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 조치(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저작권보호 관련 경고문구)[146]를 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 사항을 반영해야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145 저작권법 제25조 제6항.
146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⑫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 학교·교육기관 및 수업지원기관이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25조 제12항에서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0. 8. 4.〉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가.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나.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2.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3.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제28조

Q

### 55.
### 책이나 영화, 음악 등 각종 문화 콘텐츠 관련 감상글을 작성해서 블로그에 올리고 있는데 관련 책표지나 감동받은 구절, 노래 가사, 공연 포스터 일부를 이용해도 되나요?

A

**내 감상글이 주가 되고, 인용되는 저작물이 예시적 또는 부수적으로 이용된다면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또한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저작권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저작물의 인용을 허용하고 있다. 즉, 공표된 저작물은 1)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2) 정당한 범위 안에서, 3)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147]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의 내용과 분량,

147 저작권법 제28조.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 대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148]

인용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우선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는 예시적 규정으로서 인용의 목적이 반드시 이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문화발전을 위한 이용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문화 콘텐츠를 감상하고 관련 정보를 소개하거나 비평적 글쓰기를 하면서 내용의 일부를 부수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내 창작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노력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단순한 흥미유발을 위한 장식 등 내 콘텐츠의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149] 또한, 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150]

2) 다음으로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 정도는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내 저작물이 주된 것이어야 하고 질적 또는 양적으로 최소한의 분량을 이용하여 타인의 저작물은 예증 또는 참고자료로서 부종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타인의 저작물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를 대체할 정도가 된다면 이 규정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다.[151]

3) 마지막으로 인용하는 방법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기 위해서는 인용하는 부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면서 출처를 밝혀 피인용 저작물이 타인의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

**148**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섬네일 이미지'),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식약청 논문').

**149** 서울지방법원 2003. 5. 30. 선고 2001가합64030 판결('여행안내서').

**150**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Be The Reds! 도안').

**151** 서울고등법원 1996. 7. 12. 선고 95나41279 판결('소설감상집').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152]

한편, 위 규정에 따른 이용의 경우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수정·변경 등을 통해 동일성을 해치거나 '개작'하여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153]

**도움판례**

**서울지방법원 2003. 5. 30. 선고 2001가합64030 판결('여행안내서')**

다른 여행사의 안내서에 작성된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제공한 사안에서 법원은 "서적의 일부를 베낀 목적은 홈페이지 게재 자료를 작성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보도, 비평 등과 상관없다 할 것이고, 출처가 원고의 저작물이라는 것도 명시하지 않아 인용 방법도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도저히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인용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도움판례**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Be The Reds! 도안')**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 인용과 관련하여 법원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라고 판시하였다.

152 저작권법 제37조 제2항.
153 저작권법 제36조.

## 도움판례

### 서울고등법원 1996. 7. 12. 선고 95나41279 판결('소설감상집')

대학입시 준비에 도움이 되는 소설 감상집을 발간한 것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주장된 사안에서, 법원은 저작권법 제28조 인용의 범위에 대해 "표현형식이나 인용목적 등에서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인용의 정도에 있어서도 피인용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하거나 전부 인용하여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등 인용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라고 전제하며, "해당 사안의 도서는 각 작품 자체를 읽을 수 있도록 단편의 경우에는 전문을 중·장편의 경우에도 상당한 분량을 인용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그 인용부분이 주가 되고 있고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라 정당한 관행에 합치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 비영리 공연과 방송 - 제29조 제1항

Q

### 56.
### 도서관에서 낭독회를 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A

△

**낭독회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작권법은 문화예술의 향유와 관련한 공공의 복리를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154]이나 방송[155]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공표된 저작물의 비영리 공연·방송(제29조 제1항) 요건은 다음과 같다.

154 저작권법 제2조 제3호.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55 저작권법 제2조 제8호.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공표된 저작물 중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연하는 경우는 Q57-58 참고)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2)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것
3) 공연이나 방송의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것

1) 우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접은 물론 간접적으로도 영리 목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기업상품 선전을 위한 시사회를 무료로 공연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경제적 이익 증대에 영향을 미친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고, 공영방송 또한 수신료를 받거나 광고가 삽입되어 있다면 영리 목적의 방송에 해당하여 이 규정에 의한 이용이 제한된다.

2) 다음으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반대급부란 공연과 관련된 금전적 이익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연극동호회의 무료 공연이나 영리 목적 없는 재난구조기금 마련을 위한 공연이라 하더라도 기업 등으로부터 협찬 지원금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기부금을 받는다면 이 규정에 따른 비영리 공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마지막으로 실연자에게 공연행위에 대한 통상의 보수도 지급되면 안 된다. 흔히 교통비나 식비 등은 실연 행위에 대한 대가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우나 그 실비가 실연에 대한 대가성으로 해석될 정도에 이른다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낭독회가 위 1), 2), 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표된 저작물을 낭독하여 공연할 수 있다.

## 상업용 음반의 공연 - 제29조 제2항

Q

### 57.
### 학교에서 방송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학생들을 위해 음악을 틀어주려고 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A

○ △ X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면 저작권법 제29조 2항에 의해 상업용 음반을 이용하여 공연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상업용 음반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재생하여 들려주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 행위에 해당하고 원칙상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다만,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비영리 공연의 하나로서 입장료 등 해당 공연에 대한 비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방식의 공연이 가능하도록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상업용 음반'이란 일반적으로 CD나 디지털 파일의 음원 등 공중이 이를 구매해서 감상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한 음반을 말한다.[156]

이에 따라, 학교 방송부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들려주면서 학생들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비용 등을 받지 않는다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공연할 수 있다.

참고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상업용 음반의 재생 공연이라도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1호~7호에서 정한 경우인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단란·유흥주점, 체육시설(골프장, 무도학원 등), 경마장·경륜장, 항공기·선박·열차,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유원시설, 대형마트 등은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하며, 2018년 개정안 시행으로 1) 주점 및 음료점업(커피숍, 호프집, 비알코올 음료점 등), 2) 체력단련장(헬스클럽 등), 3)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3,000㎡ 이상) 중 복합쇼핑몰, 4) 그 밖의 대규모점포가 공연권료 납부 업종에 추가되었다. 그러나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통시장과 50㎡(약 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공연권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공연권료'란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을 말하는데, '공연사용료'는 작사·작곡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이고, '공연보상금'은 원저작물(작사·작곡)을 예술적으로 표현하거나 음반을 제작한 저작인접권자(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이다.

이러한 공연권 확대에 따라 납부하게 될 업종별, 면적별 공연권료는'매장음악 저작권 안내 리플릿'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 ⇨ 자료 ⇨ 음악공연권료 납부대상 ⇨ '매장음악 저작권 안내 리플릿'**

156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제5판)」,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 250면.

## 영상저작물의 공연 - 제29조 제2항

Q

### 58.
###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주민들을 위해 무료로 영화를 보여줘도 되나요?

A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제한된 시설이 아닌 곳에서, 관람료 등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는다면,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보여줄 수 있다.**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개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 행위에 해당하고 원칙상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다만,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영화를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입장료나 관람료 등의 비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영화 상영이 가능하도록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157]

따라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람료 등을 받지 않는다면, 저작권자에 의해 합법적으로 발행된 DVD, 블루레이(Blu-ray), 다운로드 가능한 디지털파일 등을 이용하여 영화를 보여주는 것이 가능하다.[158]

그러나 이러한 비영리 공연이라 하더라도 동법 시행령[159]에서 정한 일부 장소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공연을 할 수 없고(시행령 제1호~제7호), 특정 시설에서는 DVD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화만을 공연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시행령 제8호).

예를 들어, 시행령 제1호의 시설인 커피 전문점 등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제8호의 사회복지관 등에서는 'DVD 등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상저작물'을 이용해야만 공연이 가능하다.

---

**157** 관련 조항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9. 11. 28.자 2016헌마1115, 2019헌가18(병합) 결정[기각]). 다만,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의견, 즉 영상저작물의 공연행위는 향후 이용가능성을 소멸시켜 간접적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는 등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견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58** 참고로 영화개봉과 동시에 서비스되는 '스트리밍' 영화의 경우('넷플릭스' 등)는 이용약관을 통해 '대중 공연을 목적으로 한 서비스 이용 제한'을 명시한 경우가 있다.

**159**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제7호(저작권자의 허락 필요), 제8호(DVD 발행일로부터 6개월 지난 영상저작물만 가능).

## [저작권법 관련 조항]

▪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대통령령).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하는 공연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

4.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 「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의 공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사박물관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군·구민회관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제30조

Q

### 59.
### 혼자 공부하기 위해 시험문제를 복제해서 이용해도 되나요?

A

**사적 범위 내에서 영리 목적 없이 이루어지는 복제 행위라면 가능하다.**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적 복제'를 허용하는 이유는 가정과 같이 한정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이용행위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염려가 적고, 이에 대해 일일이 저작권자가 규제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칫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디지털 복제기술이 발달하면서 각종 저작물이 빈번히 복제됨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위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고 운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위 규정의 적용을 위해서는, 우선 '영리 목적이 없는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여야 한다. 즉, 개인적인 취미나 교양을 위한 복제가 아니라 기업이나 단체 내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한 저작물의 복제 행위는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160]

또한,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복제할 수 있다.[161] 즉, 소규모 동아리 모임과 같이 개인적으로 유대관계가 깊은 소수 인원이 이용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사적 복제의 경우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162] 사적 복제의 취지는 폐쇄적이고 사적인 영역의 영세한 복제 행위를 허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물을 복제하여 개인적으로 소장하거나 공부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위 범위를 벗어나서 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파일로 만들어 공유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도움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1. 선고 2013나36100 판결('사내 신문기사')**

회사의 홈페이지를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 소수 사원에게 엄격한 로그인 절차를 거쳐서만 신문기사 게시물을 볼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법원은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회사인 '기업'을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 가정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중략)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의 경우 설령 내부적 이용이라 하더라도 이를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1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1. 선고 2013나36100 판결('사내 신문기사').
161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식약청 논문').
162 저작권법 제30조 단서.

## 도움판례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식약청 논문')

타인의 논문 전체를 그대로 복사하여 식약청에 제출한 사안과 관련하여 법원은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규정하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

## 시·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 제33조 및 제33조의2

Q

### 60.
### 재능기부로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점자나 수어로 변환하여 제공해도 되나요?

A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점자(복제·배포)나 수어(복제·배포·공연·공중송신)로 변환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녹음이나 자막 등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제33조)

영리 목적 여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다만,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용 기록방식'[163]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하기 위해서는 1)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2) 법에서 정한

163 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법 제3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1. 점자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기록방식
2.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
4. 시각장애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정보기록방식

일정한 시설(시각장애인을 위한 관련 시설 및 특수학교 등)[164]에서만 3) 공표된 어문저작물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음악저작물 등을 녹음하여 제공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시각장애인'이란 시력이 낮거나 잃은 사람뿐만 아니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 능력이 뚜렷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도 포함된다.[165]

■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제33조의2)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누구든지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공표된 저작물을 '한국수어'로 변환하여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경우와 같이 공표된 저작물 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1)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2) 법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청각장애인을 위한 관련 시설 및 특수학교 등)[166]에서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여기서 '청각장애인'이란 청력이 낮거나 들을 수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167]

한편, 드라마나 영화 등의 대사를 수어나 자막으로 변환하여 그 수어나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배포·공중송신할 수 있으나, 해당 영상저작물 자체를 함께 제공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

164 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165 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
166 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의2.
167 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의3.

Q

## 61.
## 미술작품 원본을 소유하고 있는데, 전시할 수 있나요?

A

**미술작품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사람은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술작품 원본을 구매한 경우, 저작권도 양도받은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저작권'은 미술작품 원본에 대한 '소유권'과는 별도로 무형의 창작성 있는 표현에 대해 인정되는 권리이며, 미술작품 원본을 구매하였더라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저작권은 여전히 미술작품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있다. 그러므로 미술작품 원본 소유자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에서 예외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술작품을 함부로 이용할 수 없다.

저작권법 제35조에 의하면, 미술작품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사람은 그

저작물의 원본에 의하여 전시를 할 수 있다.[168] 이는 저작권의 일반원칙만을 적용할 경우 미술작품 소유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미술작품 원본의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169]

그 밖에, 미술저작물 원본 소유자는 원본을 전시·판매하기 위해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그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170] 그러나 단순 소개의 목적을 넘어 사실상 작품의 감상을 대체할 정도의 화집이나 화보 형태의 카탈로그, 포스터 등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또한, 이 규정은 오프라인 및 인쇄물 형태로의 복제와 배포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CD로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디지털 파일로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제한된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면, 즉 미술작품을 디지털 파일로 복제하여 전송 등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락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미술작품의 온라인 판매 및 온라인 전시홍보가 일반화된 현재 상황을 고려한다면,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디지털 형태로 게시하는 것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허용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171]

---

**168**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

**169**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 단서.

**170** 저작권법 제35조 제3항.

**1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7. 선고 2008가합21261 판결('미술경매사이트').

## 도움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7. 선고 2008가합21261 판결('미술경매사이트')

작품의 소유자들로부터 그 판매를 의뢰받고 경매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목록 형태로 축소 이미지 등을 게시한 사안에서 법원은 "미술저작권자의 전시권, 복제권 등을 제한하는 위 저작권법 제35조의 규정은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에 최초로 규정된 이래 동일한 바, 그렇다면 미술저작권자의 전시권, 복제권 등을 제한하는 위 저작권법 제35조의 규정이 위 규정 제정 이후 신설된 공중송신권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가 문제되는데, 저작권법 제35조 제3항은 그 제정 당시(1986. 12. 31.) 미술저작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홍보하는 형태에 관하여 미처 고려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위 조항의 의미 등을 종합할 때, 위 조항은 미술저작물 등의 공중송신권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중략) 따라서,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것'을 '책자'로 제작하는 경우와 같이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도 저작권법 제35조 제3항에 의하여 허용된다."라고 하고, 다만 제한의 정도에 있어서 "저작권법 제35조 제3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의 정도는 그 입법취지에 따라 필요 최소한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① 인터넷에 게시하는 전송행위는 1회 제작으로 종료되는 서적 형태의 도록 등을 제작하는 경우에 비하여, 상당히 지속적이고 전파가능성도 훨씬 커 판매가 완료된 이후에도 저작물을 계속 게시하는 것은, 저작물의 판매를 위해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위 규정의 명문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고, ② 제공되는 이미지의 해상도 및 파일의 크기에 있어서도 마치 복제화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고도의 해상도나 크기를 갖는 파일을 제공하는 것은 원저작물에 관한 정보 제공이라는 목적을 넘어서는 결과에 이르러 마찬가지로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의 이용 - 제35조

Q

### 62.
### 유명거리의 벽화를 사진으로 찍어 달력이나 엽서 상품으로 제작해서 판매해도 되나요?

A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미술저작물은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지만,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미술저작물 등이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의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172] 이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개방된 장소의 저작물까지 저작권으로 제한하여 일반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개방된 장소'란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옥외의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호텔

172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라운지처럼 '옥내의 장소'라면 비록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공중이 쉽게 볼 수 없는 곳이어서 이에 해당하기 어렵다.[173]

다만, 개방된 장소에 전시된 미술저작물 등을 복제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된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즉, 개방된 장소에 있는 유명 미술작품이나 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여 SNS에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복제의 목적이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한 것이거나 '판매'를 위한 것이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미술저작물 등을 '옥외 건물이나 버스의 차체 등에 묘사'하거나'판매를 위해 제작한 달력이나 엽서 등에 묘사'하는 등의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다.

**도움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7. 선고 2006가합104292 판결('호텔라운지')**

호텔 라운지에 전시된 미술저작물 등을 이용한 사안과 관련하여 법원은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라고 함은 도로나 공원 기타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옥외의 장소'와 건조물의 외벽 기타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옥외의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옥내의 장소'는 비록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공중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중략) 이 사건에서 보면, 호텔 △△△△ 1층 △△라운지는 일반 공중의 출입이 제한되지 아니하여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만 호텔 △△△△의 내부 공간으로서 (중략)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호텔의 내부에 전시된 원고의 미술저작물을 자유로이 복제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 미술저작물의 자유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

17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7. 선고 2006가합104292 판결('호텔라운지').

## 부수적 복제 - 제35조의3

Q

### 63.
### 영화관에서 브이로그 촬영 중에 배경으로 영화 포스터가 찍혔습니다. 저작권 침해인가요?

A

**'우연히 부수적'으로 촬영된 경우라면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지만, 그 저작물이 주된 대상으로 활용된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2019년 저작권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가상·증강 현실 기술을 이용한 관련 산업 등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작권법 제35조의3 "부수적 복제" 규정이 신설되었다. 사진 촬영, 녹음 또는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 이를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여, 의도치 않은 저작물 이용에 대해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제한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본 규정은 가상·증강 산업뿐만 아니라, TV 드라마, 영화 등의 촬영 중에 주된 대상 이외의 저작물이 '우연히 부수적으로 촬영되거나 녹음된 경우'에 있어 저작권 침해의

여지를 줄임으로써 현행법의 공백을 일부 채워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규정에 따른 이용이라면 출처 표기의 의무에서도 제외된다.[174]

여기서 '부수적'이라는 것은 그 저작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위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이용이 주된 이용에 비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사회통념상 경미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175] 즉, 영화관에서 브이로그 영상을 촬영하는데 우연히 포스터가 영상에 포함된 경우는 부수적 이용행위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포스터를 주된 대상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부수적 이용행위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제35조의3 단서에 따르면,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이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촬영 중에 '우연히 부수적'으로 영화 포스터가 촬영되었고, 이러한 이용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포스터를 주된 대상으로 촬영하거나 적극적으로 보여줄 의도로 촬영을 하는 경우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174**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

**175** 오승종, 「저작권법(제5판)」, 박영사, 2020, 874면.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제35조의5

Q

### 64.
###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사항들을 고려하게 되나요?

A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2011년 저작권법 일부개정을 통해 개별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를 좀 더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공정이용 일반규정(현행법 제35조의5)'이 마련된 바 있다. 이 규정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저작물의 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었으나, 다른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제23조~35조의4)들과 달리 구체적인 사례마다 최종적으로 법원의 해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일부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고려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현행법 제35조의5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위 법에 따른 공정한 이용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따라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전, 위 각호의 사항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실제 분쟁사례에서 법원이 판시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블로그에 채식 장려를 위한 비평글을 작성하며 구글(Google)에서 찾은 '광어회 섬네일(thumbnail)' 이미지 사진을 무단 인용한 사안에서 법원은"1)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한 목적 및 성격이 영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2) 이 사건 사진이 피고의 게시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이 크지 아니한 점, 3)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한 것이 이 사건 사진의 관련 시장 및 가치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4) 그 밖에 이 사건 사진의 크기 및 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비평 활동을 함에 있어 해당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저작권법 제35조의3(현행법 제35조의5)이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176]라며 위 4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공정이용'의 법리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공한다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사안별로 적용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함에 있어서는 그만큼 신중함이 필요하다.

---

**17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5가소308746 판결('광어회 섬네일').

## 도움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9노2573 판결

입사 시험문제를 비판할 목적으로 비판 글과 시험문제를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한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입사 시험의 시험문제를 비판하기 위해 문제들을 웹사이트에 게시한 것이 이 사건 시험문제를 영리적 목적이 아닌 비판 목적으로 게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시험문제를 게시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시험문제를 다시 시험에 사용할 계획이 있다거나 기출문제집으로 출간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 이 사건 시험문제 중 객관식 문제는 누가 출제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고, 주관식 문제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점에서 시험문제의 현재 또는 장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다.

Q

## 65.
## 학교 수업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CD로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줘도 되나요?

A

**학교 수업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된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프로그램저작물도 다른 일반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요건하에서 저작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저작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저작권법에서는 별도의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중 저작권법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의 내용을 살펴보면,

1) 재판 또는 수사, 감정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단, 제23조와는 달리 입법·행적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 않다.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으로 한정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제25조 제3항과 제4항의 규정과 달리 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은 불가하며, 교육지원기관이나 학생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보상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 제2항과는 달리 배포·공중송신은 허용하고 있지 않다.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만, 비영리·개인적 이용을 위한 목적으로만'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이 아닌 공공장소 등에서는 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제30조와는 달리 가까운 관계의 소수가 이용하는 것도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 또는 검정을 목적(비영리)으로 하는 '복제 또는 배포'를 허용하고 있지만, 제32조와는 달리 공중송신은 허용하고 있지 않다.

6) 정당하게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이용하는 자가,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한 프로그램 기능을 조사·연구·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프로그램의'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제한 규정 역시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된다. 또한, 복제 및 공중송신이 용이한 프로그램저작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저작물에 비해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보수적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즉, 학교 교육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수업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만큼의 복제나 배포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프로그램 전부를 별도의 CD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

2025

# 저작권 상담 사례집

#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 실연자의 권리

Q

# 66.
#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역할을 모방해서 광고를 제작하면 실연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나요?

A

○ △ X

**그 역할 모방이 작품에 등장하는 배우의 모습과 동일시되더라도,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특정 드라마나 영화가 크게 인기를 얻을수록, 등장인물들의 역할과 유행어를 모방하여 상품 광고나 포스터 제작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저작권법상 배우 등 실연자에게는 저작인접권이 발생한다. 실연자란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177] 표현하는 대상이 저작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177 저작권법 제2조 제4호.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면 실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술이나 서커스 쇼, 리듬체조나 피겨스케이팅 등도 단순한 기술이나 기능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예술 또는 오락적 성격으로 표현된 것이라면 실연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실연한 실연자들에게 저작인접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같은 권리는 부여되어 있지 않다. 즉, 다른 사람이 유명 배우나 가수의 실연행위를 모방·모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실연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178] 따라서 실연 그 자체를 촬영하거나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은 실연자의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지만, 성대모사나 모창 등을 통해 흉내만 내는 것은 경우에 따라 저작자의 저작권 침해가 될지언정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인의 용모, 성명, 음성, 동작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퍼블리시티권[179]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특정 배우나 가수의 역할을 모방하여 해당 유명인이 가지는 고객흡인력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로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사진을 이용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유명인의 음색이나 역할과 결부된 유행어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180]

---

**178** 저작권법 제2조 제4호.

**179** 퍼블리시티권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규정에 대하여, 본 사례집 Q20 참조.

**180** 서울고등법원 2014. 4. 3. 선고 2013나2022827 판결('연예인사진 어플').

## 도움판례

### 서울고등법원 2007. 5. 22. 선고 2006나47785 판결('사랑은 비를 타고')

초연 뮤지컬 연출에 관해 저작인접권 침해가 주장된 사안에서 법원은 "실연자가 법 제63조 등에 의하여 가지는 저작인접권은 실연자가 특정 시점에서 실제로 행한 실연 그 자체를 녹음·녹화 또는 사진 촬영하는 등 복제할 수 있는 권리일 뿐, 그 실연과 유사한 다른 실연에 대하여는 권리가 미치지 않는바, 원고 3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 3이 초연 뮤지컬의 개별 공연 시 행한 연출 그 자체를 복제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은 초연 뮤지컬의 연출에 관한 원고 3의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판시하였다.

## 도움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4. 4. 3. 선고 2013나2022827 판결('연예인사진 어플')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이용자들이 자신이나 타인의 얼굴을 촬영하여 입력하면 닮은꼴 연예인을 찾아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문제가 된 사안에서 법원은 "甲회사가 사용한 乙 등의 사진이 乙 등의 허락하에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연예인인 乙 등이 자신에 대한 홍보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공개하여 이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다른 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乙 등이 예상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乙 등의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 및 초상과 성명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甲회사가 무단으로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乙 등의 사진과 성명을 사용한 행위는 위법하고 그로 인해 乙 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甲회사는 乙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 도움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9. 선고 2006가단250396 판결('따라와')

SBS TV의 코미디 프로그램 '웃찾사의 따라와' 코너를 모방하여 이벤트 화면을 제작한 사안에 대해 법원은 "원고 소속 연기자들이 TV 프로그램인 '웃찾사의 따라와' 코너를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어 그들 개인의 용모, 이름, 음성, 동작, 실연 스타일 등 총체적 인성(personal identity)에 대한 상품적 가치인 퍼블리시티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원고의 동의 없이 '따라와' 코너를 모방하여 원고 소속 연기자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는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나 직접 사진을 이용하여 홍보한 것이 아니므로 초상권 침해 여부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 도움판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3가합32048 판결('퍼블리시티권')

"고유의 명성, 사회적 평가, 지명도 등을 획득한 배우, 가수,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상품에 부착되거나 서비스업에 이용되는 경우 상품의 판매촉진이나 서비스업의 영업활동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러한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이 갖는 고객흡인력은 그 자체가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로 취급되어 상업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성명권, 초상권 등 일신에 전속하는 인격권이나 종래의 저작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법리만으로는 이를 설명하거나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래에 이르러 연예, 스포츠 산업 및 광고 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성명이나 초상, 서명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 실연자의 권리·음반제작자의 권리

Q

# 67. 음악을 인터넷에 올리려고 하는데 (SNS, BGM 등)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A

**음반을 이용하려면 작사·작곡자,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한 곡의 음악이 상업용 음반으로 제작되어 우리에게 전달되려면 여러 분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작사·작곡자, 이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실연자,[181] 그리고 이것을 음반으로 고정시키는 음반제작자[182]가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작사·작곡자는 음악저작물을 실질적으로 창작한 저작자로서 이들에게는 '저작권'이 부여되고,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데에 기여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는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로서 '저작인접권'이 부여되고 있다.

181 저작권법 제2조 제4호.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182 저작권법 제2조 제6호.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음악을 인터넷에 올리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작사·작곡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 등 해당 음악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복제와 전송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저작재산권'과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인접권'은 양도가 가능하므로, 작사가·작곡가로 표기된 사람이 현재의 저작권자가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이용 허락을 받을 때는 창작자나 가창, 연주자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현재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위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직접 관리하지 않고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할 수 있다. 만약 권리자가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하였다면, 아래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해당 음악의 신탁 여부 및 이용 절차 등을 문의하고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다.

| 단체명 | 권리자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작곡가, 작사가 | https://www.komca.or.kr | 02-2660-0400 |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 작곡가, 작사가 | http://www.koscap.or.kr | 02-333-8766 |
| 한국음반산업협회 | 음반 제작자 | http://www.riak.or.kr | 02-3270-5900 |
| 한국연예제작자협회 | 음반 제작자 | http://www.k-pops.or.kr | 02-2677-7630 |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가수, 연주자 | http://www.fkmp.kr | 02-745-8286 |

저작권료에 관하여, 신탁관리단체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을 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요율 또는 금액에 의하여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되며, 신탁하지 않은 권리자 본인으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을 때는 상호 간 합의에 따라 정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181) 저작권법 제2조 제4호.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182) 저작권법 제2조 제6호.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 방송사업자의 권리

Q

### 68.
###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경기 시청을 위한 입장료를 받고 TV 중계방송을 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A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 방송사업자의 권리 중 공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송사업자는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 중의 하나인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방송사업자의 권리에는 방송을 복제할 권리인 '복제권'[183]과 동시중계방송을 할 수 있는 권리인 '동시중계방송권'[184],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을 공연할 권리인 '공연권'[185]이 있다.

183 저작권법 제84조.
184 저작권법 제85조.
185 저작권법 제85조의2.

이 중 '공연권'은 2011년 개정법에 의하여 방송사업자에게 새로 부여된 권리로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시설에서 방송의 시청에 대한 입장료 등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받는 경우에 그러한 방송의 공연을 금지하거나 허락할 배타적 권리이다.

이 규정은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입장료를 받고 방송을 시청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TV 방송을 상영해 주는 대가로 입장료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음식점이나 주점 등의 영업소에서 TV 방송프로그램을 상영하는 것에 대하여는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186]

결론적으로,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는 방송사업자의 권리 중 공연권을 침해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186 오승종, 「저작권법(제5판)」, 박영사, 2020, 1006면.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Q

### 69.
### 채용정보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구인구직 데이터 베이스(DB)의 일부를 정리하여 고객들에게 배포해도 되나요?

A

**데이터베이스 개별 소재의 일부 이용은 가능하지만, 일부 이용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권리 침해가 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187]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로 보호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각 소재(예: 전화번호)가 아니라,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예: 전화번호부)이고, 저작권법은 이러한 소재의 수집, 배열, 구성, 갱신, 검증,

187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보충 등에 상당한 투자[188]를 한 사람을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 보호하고 있다.[189]

원칙적으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이하 "복제 등")할 권리를 가지므로,[190]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면 당연히 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예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 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으로 본다.[191]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개별 소재 또는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비영리 교육·학술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와 시사보도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저촉되지 않는 한,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그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192]

결론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개별 소재의 일부만을 이용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 데이터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188** 특정 종류의 데이터베이스와 그 구성정보의 사회·경제적 중요성, 수집과 조직의 용이성, 그 보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개별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참고로 WIPO 조약안 제2조 제4호는"상당한 투자"를 "질적·양적으로 중요한 투자(qualitatively or quantitatively significant investment)"로 정의하고 있다[이상정,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계간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03(가을호),

**189** 저작권법 제2조 제20호

**190**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191**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192** 저작권법 제94조 제2항.

## 도움판례

### 부산지방법원 2010. 9. 2. 선고 2010가합2230 판결('작명법 한자자료')

작명법 책자 일부 한자자료에 있어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 발생과 관련하여 법원은 "이 사건 한자 부분이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한자 부분은 그 대부분이 원고 도서 이전에 이미 발행된 도서인 위 「C」 중 216면부터 340면까지와 거의 동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이를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 도움판례

### 서울고등법원 2008. 4. 16. 선고 2007나74937 판결('법원사건검색DB')

특정 법조인 2명 사이에 개인정보 및 경력이 일치하는 경우 일정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인맥지수를 산출하고, 법률 서비스의 수요자들에게 이를 이용한 유료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 사건에서 법원은 "사건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원은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여 소송사건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였을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사건검색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반복적·체계적으로 수천만 건에 이르는 소송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행위는 위 사건검색 데이터베이스의 상당 부분을 복제한 것에 해당하여(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참조)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건정보의 수집과정에는 위법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였다.

## 도움판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2. 24. 선고 2014가합104306 판결

"피고들은 원고의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에 해당하는 각 경매사건의 매각대금에 관한 정보들(위와 같이 원고가 의도적으로 틀리게 수정·입력하여 게시한 것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상당수의 정보들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의 복제물을 반복적으로 영업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자신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법 제93조2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있다."

## 도움판례

### 도움판례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피고인이 API 서버로부터 수집한 정보가 피해자 회사의 숙박업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일부에 해당하는 점, 이러한 정보들은 이미 상당히 알려진 정보로서 그 수집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거나 이미 공개되어 있어 이 사건 앱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고, 데이터베이스 갱신 등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이러한 피고인 등의 데이터베이스 복제가 피해자 회사의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피해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타 회사의 API 서버로부터 정보를 수집한 피고인의 행위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5

# 저작권 상담 사례집

# 침해 대응 · 권리 구제

## 저작권 침해의 요건

Q

### 70.
### 몇 년 전 내가 쓴 웹소설의 내용과 유사한 드라마가 있는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 △ X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형적인 주제나 소재, 배경, 구성 등의 '아이디어'가 유사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건, 갈등의 구조 및 해결 과정 등 '창작적 표현'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드러나야 한다.**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 즉 아이디어가 아닌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2) 타인의 저작물에 '의거(접근)'하여 작성하였을 것(의거성), 3) 창작적 표현에 있어서 '실질적인 유사성'이 드러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우선 '저작물'이 이용되어야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데, 소설이나 시나리오와 같은 문예적 어문저작물에 있어 기본적인 주제, 구성, 배경, 소재나 이러한 요소들로부터 도출되는 전형적인 사건이나 인물의 성격 등은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

즉,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만인의 공유(public domain)에 두어 문화의 창달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193]

2) 다음으로 저작권 침해의 요건으로서의 '의거성(접근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에 대한 직·간접적인 접근의 상당한 기회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핀다.

예를 들어, '두근두근 체인지' 드라마와 '내게 너무 사랑스러운 뚱땡이' 만화 사이의 분쟁에서 법원은 "만화는 이 사건 드라마가 방영되기 전 이미 3권까지 발행·배포되었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하여 소개되었던 점, 만화의 판권을 사서 각색하기로 기획하여 원작을 물색한 점, 원작 만화의 표현력을 뛰어넘기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직접 드라마 대본을 작성하는 쪽으로 기획 방향을 바꾸어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하기에 이르게 된 점 등"[194] 만화에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능성을 근거로 의거성(접근가능성)을 인정하였다.

3) 한편,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를 살핀다.

즉, 위 사건에서 못생긴 여자의 아름다운 외모로의 변신,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순수함)과 관계(삼각관계), 전형적인 구성(라이벌의 등장 등)과 사건 등은 아이디어로서 창작적인 표현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두 저작물 사이에 구체적인 줄거리, 사건의 전개, 등장인물의 성격과 상호관계 등 원저작물의 본질적인 특징 자체를 직접 감득(感得)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웹소설과 해당 드라마에 있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형적인

---

**19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0. 선고 2012카합1315 결정.
**194** 서울고등법원 2005. 7. 27. 선고 2005라194 결정('두근두근 체인지').

주제나 소재, 배경, 구성 등의 아이디어가 아닌, 저작자의 창작적 표현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사건, 갈등의 구조 및 해결 과정 등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한다.

**도움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0. 선고 2012카합1315 결정('영화 클래식')**

○○○ 드라마가 영화(클래식)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희곡이나 대본, 시나리오 등과 같이 배우의 실연을 전제로 하는 극저작물의 경우 그 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주제나 플롯이 전형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사건들이나 등장인물의 성격 등과 같은 요소는 설령 그것이 표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가 주어질 수 없고(이른바 표준적 삽화의 원칙),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과 그러한 사건들의 연속과정, 극적인 전개, 등장인물의 구체적인 성격, 그들의 구체적 행위 등의 극적인 요소만이 극저작물에 있어 보호받는 표현이 존재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창작행위를 함에 있어서 소재로 되는 아이디어 또는 전형적인 사건·표현이나 장면묘사에까지 저작권의 보호를 부여하여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면 장래에 다른 창작자가 창작을 할 기회를 박탈하게 되므로, 이러한 소재 등은 만인의 공유(public domain)에 두어 문화의 창달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통상 그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그와 같은 소재나 사건·장면들을 최초로 창작하여 사용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사정 등에 논거를 두고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도움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3. 18. 선고 2002가합4017 판결('여우와 솜사탕')**

사건의 전개는 등장인물들 각자의 캐릭터 상호간의 갈등의 표출과 그 해소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등장인물들의 갈등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조합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주요 등장인물들 상호간의 갈등구조나 그 조합이 이 사건 1 대본과 이 사건 2 대본 및 드라마 사이에 상당할 정도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그 갈등의 내용이 구체적인 줄거리나 사건의 전개과정을 통하여 볼 때 양자가 상당 부분 대응된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있어 1 대본과 2 대본 및 드라마 사이의 비문자적, 포괄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 (중략) 1 대본과 2 대본 및 드라마의 인물 간 상호관계로 나타나는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구체적인 에피소드의 면에서도 동일성이 있다. (중략) 2 대본 및 드라마에는 1 대본과 비슷한 상황에서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대사가 등장하는 예가 발견됨으로써 부분적, 문자적 유사성이 인정된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그 주된 흐름인 남, 녀 주인공과 그 가족 간의 이야기 부분이 1 대본의 해당 부분과 포괄적, 비문자적 유사성 및 부분적, 문자적 유사성이 인정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2 대본 및 드라마는 1 대본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 저작권 침해의 요건(2)

Q

### 70-1.
### 시험문제의 보기 순서를 바꾸거나, 시험문제 중 특정 단어 1~2개를 교체하여 입시학원 문제집에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A

**시험문제 중 특정 단어 1~2개를 교체하는 것은 해당 시험문제를 복제하는 것으로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시험문제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시험문제의 보기 순서를 바꾸거나, 시험문제 중 특정 단어 1~2개를 교체하는 것은 해당 시험문제를 복제하는 것으로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일 것', '창작성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사상 또는 감정'은 아이디어에 해당하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문자(어문), 색(미술) 등으로 나타낸 것이 '표현'이며 저작권의 보호는 '표현'에만 미친다.

창작물의 요건으로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대법원 2014. 4. 27. 선고 2012다28745 판결 참조).

## 도움판례

### 서울중앙지법 2006.10.18.선고, 2005가합73377 판결

시험문제가 현행 교과과정에 따른 교육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그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정형화된 내용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교사인 원고들이 자신들의 교육이념에 따라서 소속 학교 학생들의 학업 수행 정도의 측정 및 내신성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남의 것을 그대로 베끼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시험문제를 출제하였고, 그 출제한 문제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Q

## 71.
## 제가 건축물을 축소하여 만든 모형(원본 모형)을 다른 사람이 유사하게 만들어(유사 모형)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원본 모형이 창작성 있는 저작물임을 전제로, 실제 건축물과는 달리 원본 모형에 새롭게 부가된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가지고 판단해볼 때, 원본 모형과 유사 모형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 및 의거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 즉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2) 타인의 저작물에'의거(접근)'하여 작성하였을 것(의거성), 3) 창작적 표현에 있어서 '실질적인 유사성'이 드러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우선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원본 모형)이 저작물로 인정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실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도 실제 건축물을 축소하여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형상, 모양, 비율, 색채 등에 관한 변형이 가능할 것이고, 그 변형의 정도에 따라 실제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난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195]

2)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하려면, 원본 모형에 의거하여 유사 모형이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거관계는 원본 모형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인정되거나, 유사 모형과 원본 모형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다. 이때의 판단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작될 수 있으며,[196] 원본 모형과 유사 모형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의거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197]

3)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본 모형과 유사 모형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도, 실제 건축물의 창작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건축물을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원본 모형에 새롭게 부가된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1) 원본 모형이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인정되고, 2) 원본 모형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거나 추정되고, 3) 이러한 모형을 만드는 과정에서 새롭게 부가된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가지고 판단해볼 때, 원본 모형과 유사 모형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

**195**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숭례문 모형').
**196**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
**197**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55068 판결.

## 도움판례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숭례문 모형')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도 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하여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형상, 모양, 비율, 색채 등에 관한 변형이 가능하고, 그 변형의 정도에 따라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이 실제의 건축물을 충실히 모방하면서 이를 단순히 축소한 것에 불과하거나 사소한 변형만을 가한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는 변형을 가하여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난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패러디와 저작권 침해

Q

# 72.
# 영화의 일부 장면이나 포스터를 패러디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A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패러디'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특정 노래나 드라마, 영화 등이 인기를 끌게 되면 여러 분야에서 이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등장한다. 그 과정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 패러디'이다.

일반적으로 '패러디'란 널리 알려진 원작을 흉내 내거나 과장하여 비평이나 풍자를 이끌어내는 것을 말한다. 원작 자체를 비평이나 풍자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뿐만 아니라('직접적 패러디'), 원작에 편승하여 특정 목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용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매개적 패러디').

패러디는 기본적으로 원작에 대한 수정이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이

과정에서 복제권 혹은 2차적저작물작성권[198] 및 저작인격권의 동일성유지권[199]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다만 패러디는 예술적 표현양식의 하나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저작권 침해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패러디가 저작권 침해로서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나름의 근거와 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패러디에 대해 저작권이 제한된다고 할 경우 제시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은'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5)'[200]이다. 만약, 패러디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저작권법에 공정이용이 도입되기 전, 패러디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하급심 판결에서는 "패러디로서 저작물의 변형적 이용이 허용되는 경우인지 여부는 저작권법 제25조(현행법 제28조) 및 제13조 제2항(동일성유지권)[201]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원저작물에 대한 비평·풍자 여부, 원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성격, 이용된 부분의 분량과 질, 이용된 방법과 형태,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 내지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202]라고 언급하고 있다.

법원은 패러디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원저작물과 독립된 창작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누가 보더라도 기존의 원작품을 과장하여 흉내낸 것으로 풍자하거나

---

**198** 저작권법 제22조.

**199** 저작권법 제13조

**200**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201** 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202** 서울지방법원 2001. 11. 1. 선고 2001카합1837 결정('컴배콤 사건').

희화화한 것이 명백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203] 이에 따라 기존 작품을 풍자하거나 희화화하여 원저작물과 독립된 창작성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패러디가 아닌 단순 '복제'에 해당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드라마나 영화의 인기에 편승하여 특정 장면이나 포스터를 수정·변경하여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법에서 허용되는 패러디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 도움판례

### 서울지방법원 2001. 11. 1. 선고 2001카합1837 결정('컴배콤 사건')

'Come Back Home' 이라는 유명 가요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개사하고, 해당 가요의 뮤직비디오를 패러디로 이용하여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한 사안에서 법원은 "기존의 저작물에 풍자나 비평 등으로 새로운 창작적 노력을 부가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유용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점으로 이른바 패러디가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하여 허용될 여지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하겠으나, 이 사건 원곡에 나타나는 독특한 음악적 특징을 흉내 내어 단순한 웃음을 자아내는 정도에 그치는 것일 뿐 신청인이 이 사건 원곡에 대한 비평적 내용을 부가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패러디로서 보호되는 것은 해당 저작물에 대한 비평이나 풍자인 경우라 할 것이고 해당 저작물이 아닌 사회현실에 대한 것까지 패러디로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개사곡은 패러디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라고 판시하였다.

20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6노1019 판결.

## 도움판례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도5797 판결

A의 노동착취를 비판할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A의 사진과 포스터를 다운로드 받아 사진의 여백을 삭제하여 피고인이 창작한 포스터로 대체하고, 다운로드 받은 포스터의 문구부분을 삭제하고 사진 부분만 남겨 피고인이 창작한 포스터를 우측 중간면에 삽입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이용된 저작물에 어떠한 새로운 창작성이 더해졌다고 판단되지 않아 이는 패러디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비판 대상의 노동착취 현실을 고발하기 위한 목적은 비판 대상의 통상적인 프로필 사진을 게재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용된 저작물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변형한 포스터를 게시한 인터넷 카페와 페이스북 게시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되어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는 점,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점에서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이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

## 글꼴(폰트) 무단 이용

Q

### 73.
### (카페, 블로그 등)에서 이용 제한 표시를 확인할 수 없는 글꼴(폰트)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했습니다.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나요?

A

○ △ X

**글꼴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와 형식의 이행이 필요하지 않다.

글꼴(폰트) 파일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용제한 등의 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글꼴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내려받아 설치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글꼴(폰트) 파일의 저작권자가 이용 허락 없이 글꼴 파일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표시를 한 경우, 해당 글꼴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권리자가 이용을 허락하지 않았거나 허락 등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 허락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구분 | 저작재산권 침해(법 위반) | 약관(이용계약) 위반 |
|---|---|---|
| 형태 |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자의 재산적 권리(저작재산권*)를 침해하는 경우<br>*저작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 저작재산권 침해 이외에 권리자가 정한 사용 범위와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br>*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더라도 약관(이용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
| 책임 | 민형사상 책임 | 민사상 책임 |

##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Q

# 74.
# 유명 연예인 사진이나 캐릭터 이미지를 이용하여 '굿즈(goods)' 또는 '인스(인쇄소 스티커)'를 제작해도 되나요?

A

○ △ X

**사적 이용의 범위를 넘어, 사진이나 캐릭터 이미지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여'굿즈'나 '인스(인쇄소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팬덤 문화를 기반으로 한 '굿즈' 제작은 유명 연예인들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된 지 오래다. 그리고 웹툰이나 일러스트 작가들의 경우 본인들이 창작한 캐릭터를 이용하여 '인스'를 제작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사적인 이용의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인 사진이나 캐릭터 이미지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굿즈나 인스를 제작·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물론 내가 찍은 유명 연예인의 사진으로 굿즈를 만들어 개인적으로 소장하거나 소수의 지인들과 공유하는 정도의 이용을 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참고로 저작권법 위반 사례는 아니지만, 최근 유명 가수 방탄소년단 (BTS)의 사진들을 이용하여 화보집을 무단으로 제작·판매한 업체의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204] 법원은 화보집을 무단으로 제작·판매한 업체에 소속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낸 성과', 즉 가수 방탄소년단(BTS)의 명성, 신용, 고객흡인력 등을 자신들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소속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205]

결론적으로, 내가 찍은 유명 연예인의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굿즈 등으로 제작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면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위반으로 인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이다.

204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마6525 결정('BTS화보집').

205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침해로 보는 행위 - 저작권 침해물 배포목적 수입

Q

### 75.
### 중국에서 유명 캐릭터 상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나요?

A

△

**저작권법상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해외에서 제작·판매되는 유명 캐릭터 상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1호는 1) 수입 시에, 2)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침해로 될 물건을, 3)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본다. 또한, 저작권을 침해한 물건임을 알고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로 본다(동항 제2호).

따라서 수입 시점에 해당 캐릭터 상품이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제작·배포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불법 복제된 상품을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한다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저작권을 침해한

물건임을 안다면,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만 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로 본다. 다만 배포목적 없이 개인적인 취미나 연구 목적 등으로만 수입하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저작물이 수록된 상품들의 국제적인 시장 거래가 활성화된 지금, 진정상품에 대한 병행수입[206]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는 저작재산권자의 배포권을 제한하는 '권리소진 원칙'[207] 및 '소진의 범위'[208]와 관련이 있다. 다만, 권리소진 원칙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소멸(권리소진)되어 자유로운 배포가 가능하므로, 합법적으로 거래에 제공된 저작물의 병행수입 판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206 진정한 상표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제조되어 유통된 상품을 수입.

207 저작권법 제20조.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8 진정상품 병행수입의 경우 각 나라마다 입법과 해석의 차이가 있다. 권리가 소진된 제품은 국내외 상관없이 재판매가 가능하다는 견해(국제소진론)와 해외에서 적법하게 제작·판매되었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다시 파는 것을 저작권자가 제한할 수 있다는 견해(국내소진론)로 나뉜다(오승종, 「저작권법(제4판)」, 박영사, 2016, 575면). 우리나라는 배포권의 국제소진을 인정하는 견해가 다수이며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병행수입 자체가 저작권자의 배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Q

## 76.
## 다른 사람이 내 저작권을 침해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

**침해의 증거를 확보한 뒤, 서면으로 침해 사실을 통지하여 합의를 유도하거나, 분쟁조정 및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서면 통지]**

우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뒤, 침해자에게 침해 중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한 후 우편으로 내용증명(저작권자 1부, 우체국 보관 1부, 침해자 1부, 총 3부 작성)을 보내거나 이메일로 통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유도해 볼 수 있다.

**[분쟁 조정]**

만일 침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합의 조건 등에 이견이 있다면 한국저작권 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조정제도는 비용이 저렴하고 단기간(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내에 해결이 가능하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209] 또한, 2020년 8월부터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인 사안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210]

**[법적(민사·형사) 절차]**

마지막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형사]**

원칙적으로 형사상 저작권침해죄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저작권자는 침해 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211]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친고죄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3자도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212]

또한, 침해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7년이 지났다면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공소권이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213]

한편, 저작권을 침해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초범인 경우에 있어서는 처벌을 하지 않고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하는 제도가 있으며,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09** 저작권법 제117조 제5항.

**210** 저작권법 제117조(조정의 성립) ②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직권조정결정 이후 2주 내에 서면으로 불복 이의신청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1.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2.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211** 저작권법 제140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212**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

**213** 형사소송법 제249조.

**[민사]**

다음으로 민사는 고의든 과실이든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선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및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을 폐기'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214]

저작권이 침해되면 저작권자는 권리 자체의 교환가치 하락, 저작물 판매량의 감소, 저작물 가격의 저하, 신용훼손 등으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게 된다. 이 경우 저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이 그 침해행위에 의해 받은 이익액을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또한, 저작재산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수(이용 허락에 대한 통상적인 사용료)를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액이 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15]

또한, 등록된 저작물이 침해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에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하다.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저작권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해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마다 1천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16]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민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또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217]

---

**214** 저작권법 제123조.
**215** 저작권법 제125조.
**216** 저작권법 제125조의2.
**217** 민법 제766조.

## 도움판례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6733 판결('손해배상범위')

이미지 파일 수집 과정에서 무단 복제·전송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고, 저작권자가 그와 같은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일단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이용료를 손해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 양벌규정

Q

# 77.
# 회사에서 직원이 불법 프로그램 저작물을 이용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A

**저작권을 침해한 직원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상의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면 회사도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저작권법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하고 있다.[218] 따라서 보호받는 프로그램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불법으로 복제된 프로그램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219]

한편, 저작권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과 사용인 그 밖의

218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219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및 제136조 제2항 제4호.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220]

다만, 범죄에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는 법인 등에 대해서도 그 처벌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위헌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21]이 일부 반영됨에 따라, 2009년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 책임이 면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복제 프로그램이 이용되었다면 기본적으로 회사와 직원 모두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만일 회사가 관리·감독상의 주의를 다했다면 회사는 형사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을 것이다.

---

**220** 저작권법 제141조.

**221**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5헌가10 결정; 법인의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함.

## 도움판례

###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6968 판결('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법원은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폐지되고 저작권법으로 흡수됨) 제50조(양벌규정)는 (중략) 법인 또는 개인은 단지 형식상의 사업주가 아니라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를 말하고(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570 판결 참조),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다.

## 도움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13. 선고 2014노5298 판결('양벌규정')

회사의 직원이 폰트를 홈페이지와 강의 동영상에 무단 복제한 사안에서 법원은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직원이 위와 같은 침해 행위를 하였을 뿐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그 대표자를 위 법조의 행위자로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 외주제작 업체의 글꼴(폰트) 무단 이용

Q

### 78.
### 외주 웹디자이너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글꼴(폰트) 파일을 이용해 작업한 경우, 누리집 제작을 의뢰한 자(용역 발주자)가 책임을 지나요?

A

○ △ X

**누리집 제작에 관한 위탁·도급 계약에 따라 웹디자이너가 독립적 지위에서 독자적 판단에 따라 작업한 경우, 의뢰한 자는 글꼴 파일 저작권 침해 또는 약관(이용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외주제작은 위탁·도급 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독립적 지위에서 자신의 재량에 따라 저작물을 창작하기 때문에 외주제작 결과물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원칙적으로 제작한 자에게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웹디자이너가 특정 글자체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저작권자 허락 없이 글꼴 파일을 내려받아 이용하였다면 그에 따른 저작권 침해 책임은 웹디자이너에게 있다.

즉, 의뢰한 자는 글꼴 파일을 이용한 결과물인 이미지(글자 도안)만 이용한 것이지 글꼴(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글꼴 파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거나 약관(이용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Q

## 79.
##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저작물은 어떻게 보호가 되고, 저작권 침해 발생 시 준거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국의 저작물은 국내법에 따라 동일하게 보호되고 있으며, 권리의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의 법(침해지법)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을 시작으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WTO/TRIPs) 등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와 관련된 주요 국제 조약에 가입하였고, 해당 조약에 가입된 국가들의 저작물은 내국민대우 원칙[222]을 적용하여 국내 저작권법에 따라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베른협약 동맹국 사이에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다면,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222 베른협약 제5조. 협약에 의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어느 동맹국에서도 당해 나라의 법이 자국민에 대해 승인하는 보호를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함.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베른협약 제5조 제2항[223]에 의해, 권리의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의 법(침해지법)을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즉, 베른협약 동맹국의 저작권자가 우리나라에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다면, 내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내국민대우 원칙) '국내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반대로 우리나라 국민의 저작물이 해외(베른협약 가입국)에서 불법 복제되고 있다면 '해당 국가의 저작권법'에 따라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224]

다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그 외국에서 우리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게 보호를 제한할 수 있고, 외국인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보호하지 않는다.[225]

예를 들어, 국내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까지이지만, 중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50년'까지이다. 이 경우, 외국인의 저작물이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우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하지는 아니하므로, 중국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

**223** 베른협약 제5조 (2) 그러한 권리의 향유와 행사는 어떠한 방식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향유와 행사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 협약의 규정과는 별도로,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

**224** 서울고등법원 2012. 7. 25. 선고 2011나70802 판결('여우 도안').

**225** 저작권법 제3조 제4항.

## 도움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2. 7. 25. 선고 2011나70802 판결('여우 도안')

여우 머리 또는 영문 'FOX'를 형상화한 도안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국내 법원은 "국제사법 제24조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준거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대비한 보충적 성격의 규정이므로, 국제조약에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대한민국과 미국이 가입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2항 제2문은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수단은 오로지 보호가 요구된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규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보호가 요구된 국가(the country where protection is claimed)'는 '그 영토 내에서의 보호가 요구되고 있는 국가', 즉 '보호국'을 의미하며, 특히 저작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그 영토 내에서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호가 요구되고 있는 국가', 즉 '침해지국'을 의미하는데, 미국 법인인 갑 회사가 자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률이 보호국법이자 침해지국법으로서 준거법이 되고, 따라서 위 도안의 저작물 해당 여부, 보호기간, 저작권 침해에 관한 판단은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른다."라고 판시하였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

Q

### 80.
### 제 저작물을 무단으로 올려놓은 게시물을 발견했는데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예: 네이버, 다음)에 해당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나요?

A

**권리주장자는 침해 사실을 소명하는 등 일정한 절차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226]**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에게 침해 정지를 청구하는 것에 더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도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227] 복제·전송의 중단을 청구하는 경우 구체적·개별적으로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해야 하며,[228]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문서로

226 저작권법 제103조 제1항.
227 저작권법 제103조 제1항.
228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아래와 같은 자료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권리주장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229]

1. 자신이 그 저작물 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 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이러한 절차에 따라 복제·전송 중단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해야 한다.[230]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는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재개시키지 않아도 된다.[231]

위와 같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물의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하는 방법을 통해, 침해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232]

---

**229** 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
**230** 저작권법 제103조 제2항.
**231** 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
**232** 저작권법 제103조 제6항.

## 도움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0.10.13. 선고 2010나35260 판결

원고의 딸이 특정 가수의 노래를 부르면서 춤추는 모습을 UCC 형태로 촬영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특정 OSP의 블로그에 게시한 것에 대해 피고 협회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서 해당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SP에게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고, 원고가 재게시 요청 후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게시물이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인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여 저작권의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며, 협회에 대해서는 원고의 정당한 자유이용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되나, OSP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아 책임이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 도움판례

###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원고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 회사 사이트의 회원들이 원고가 제작한 동영상을 위 사이트에 개설된 인터넷 카페에 무단으로 게시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데도 피고 회사가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부작위에 의한 방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은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알리고 이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보냈으나 그 요청서에 동영상을 찾기 위한 검색어와 동영상이 업로드된 위 사이트 내 카페의 대표주소만을 기재하였을 뿐 동영상이 게시된 인터넷 주소(URL)나 게시물의 제목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 회사에 동영상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삭제와 차단 요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회사가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가 제공한 검색어 등으로 검색되는 게시물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명확히 알기 어려웠고, 그와 같은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하여 기술적·경제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가 위 동영상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피고 회사의 사이트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였다.

2025

# 저작권 상담 사례집

# 주요이슈

## 생성형 AI

Q

# 81.
# 생성형 AI 기술로 만든 산출물은 저작물인가요?

A

○ △ X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이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AI 산출물은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문화예술계도 예외는 아니다. 인공지능은 음악, 그림을 비롯하여 소설, 신문기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산업계에서는 산업 진흥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보호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 웹사이트에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그림을 문장으로 입력하면 AI가 그에 맞는 그림을 그려주었는데, 최근 이 그림이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아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한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음악 스타일과 분위기를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그에 맞는 곡을 생성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생성형 AI가 만든 산출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 논란이 되어왔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며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는 주체를 ‘인간’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산출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다.

## 생성형 AI

Q

### 82.
### 생성형 AI가 스케치한 그림에 인간이 채색하고 수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창작성을 가미한다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스케치를 AI가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색 및 수정 방식 등에 따라서 저작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AI가 스케치한 그림 자체는 인간이 창작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다. 또한 단순히 기존에 있는 도안을 따라서 그대로 채색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저작물로 성립될 여지는 없다.

그러나 AI가 스케치한 그림에 인간이 창작성을 가미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색을 덧입히고 별도의 수정 작업 등을 한 경우라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저작물에서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있는 영역은 인간이 채색 등을 통하여 추가로 작업한 부분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Q

## 83.
## 직접 생성한 AI 산출물은 자유롭게 이용해도 무방한가요?

A

**AI 산출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및 약관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에 유의하여 이용할 필요가 있다.**

AI 산출물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산출물을 단순히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공표되는 방식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그 이용자는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당수 AI 사업자는 이용약관을 통하여 이용자별로 차등을 두어 AI 산출물의 이용방식을 제한하기도 하는바, 해당 사항에 유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관 위반 등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각 내용에 대해 꼼꼼히 숙지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생성형 AI

Q

### 84.
### AI 커버곡을 제작하는 것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건가요? AI 커버곡을 제작하여 이용하려면 누구에게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A

**AI 커버곡을 제작하여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각 권리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다.**

기존 가수의 곡을 AI가 학습한 다른 가수의 목소리로 재생성한 이른바 AI 커버곡 제작 시에는 상업용으로 제작된 음반의 음원 파일에서 반주 부분과 가창 부분을 분리한 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올려서 다른 가수의 목소리를 입히고 다시 각 파일을 합치는 등의 방식이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 경우 해당 음악 또는 음반에 대한 복제행위 등이 수반될 수 있으며 저작권자인 작곡가·작사가,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음반제작자의 복제권 등 권리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

또한, 만들어진 AI 커버곡을 SNS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다른 방식으로 무단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음악 또는 음반에 대한 전송행위 등이 수반되므로 저작권자 및 음반제작자의 전송권 등 권리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또는 일반적 인격권 침해 등으로 규율될 여지도 있다.

따라서 AI 커버곡을 제작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로부터 커버곡 제작 등에 수반되는 각 이용행위에 대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다.

## 생성형 AI

Q

### 85.
###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도 일반적인 저작물과 동일한가요?

A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도 일반적인 저작물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AI 산출물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판단기준과 다르지 않으므로, ① AI 산출물이 기존 저작물을 인식하고 이에 근거하여 만든 것인지(의거성), ② AI 산출물과 기존 저작물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지(실질적 유사성) 각 판단기준에 따라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궁극적으로 AI 산출물이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을 통해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AI 산출물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 의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것인지, 그에 대한 증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과 관련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향후 해외 동향과 관련 판례 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 침해의 성립 요건**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각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 의거성은 침해자가 피침해자의 저작물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을 것을, 실질적 유사성은 저작물 상호 간에 저작권법상의 침해 책임을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정도의 유사성이 있을 것을 의미

2025

# 저작권 상담 사례집

# 부록

- 저작물 이용 시 저작권 침해 점검 목록
- 저작권 침해 시 대응 방법
- 저작권 관련 참고자료 위치 안내
- 저작권 관련 주요 사이트 안내
-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SNS
- 저작권 법률상담

# 저작물 이용 시 저작권 침해 점검 목록

## 사전확인 1 이용 대상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지 점검

▪ **저작권법상 저작물인가?**
- 창작 주체가 인간으로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
- 작품에 내재된 아이디어, 사상 등이 아닌 작성된 표현물 자체(글, 그림, 소리, 영상, 사진 등으로 표현된 것)
- 절차, 공정, 방법, 이론, 원리, 원칙 등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아님

▪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가?**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등의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 3가지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저작권법상 보호기간이 만료하였는가?**
- 저작재산권 만료 여부:
  - 단독저작물의 경우 저작자 사후 70년이 지났나 확인
  - 공동저작물의 경우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후 70년이 지났나 확인
  - *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이라면 만료저작물에 해당
  - * 1963년 이후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권은 2033년 12월 31일 이후까지 보호기간이 존속
  - 영상저작물, 업무상저작물, 무명·이명저작물의 경우 공표 후 70년이 지났나 확인
- 저작인접권 만료 여부:
  - 실연(실연한 때부터), 음반(발행한 때부터)의 경우 70년이 지났나 확인
  - 방송(방송을 한 때부터)의 경우 50년이 지났나 확인

※상세내용 저작권 보호기간 참조(92~101p)

## 사전확인 2 저작물 이용이 허락되었는지 점검

▪ **합법적인 경로로 습득한 저작물인가?**
- 온오프라인에서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습득한 저작물을 이용하는지 확인

▪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있는 저작물인가?**
- 적법한 권리자(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받은 저작물 이용인지 확인

▪ **허락받은 이용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것인가?**
-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은 이용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지 확인
  -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대여, 공중송신, 2차적저작물작성 등 이용 범위
  - 그 밖의 구체적인 이용 허락(라이선스) 조건과 범위 등

**사전확인 3**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가능한 이용인지 점검

- **재판 등에서의 복제 여부**
  - 재판 또는 수사, 입법·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라면 가능
-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여부**
  -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이면 가능(단,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지 못함)
-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여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이면 가능(단,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저작권이 등록된 저작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자료는 제외)
-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여부**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경우는 가능(대학교 이상의 교재, 학원교재 등 제외)
  - 학교 또는 교육기관(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및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음
  -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음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여부**
  -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음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여부**
  -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음
  - 본인 저작물이 주(主), 인용하려는 저작물(피인용 저작물)이 종(從)이 되어야 하고 피인용 저작물이 타인의 것이라는 점을 출처를 밝혀 명확히 하여야 함. 다만, 영리적 이용의 경우는 비영리적 이용에 비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됨

▪ **공정한 이용 여부**

-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
-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정이용 여부 판단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인지 여부**

- 비영리를 목적으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 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방송할 수 있음. 다만, 실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음

커피전문점,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 유흥주점, 경마장, 경륜장·경정장,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체력단련장, 여객용 항공기,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여객용 열차,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유원시설, 대규모 점포(전통시장과 50㎡(약 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 제외), 백화점, 쇼핑센터, 숙박업소, 목욕장인 경우에는 허락 필요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사박물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군·구민회관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에는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난 영상저작물만을 공연할 수 있음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여부**

- 비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 가능.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제외

▪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여부**

-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음. 다만, 영리 목적인 경우는 제외

▪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미술·건축 저작물의 복제 여부**

-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 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음. 다만,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는 제외

▪ **부수적 복제 여부**

-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부수적으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되었다면, 이를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음. 다만,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사전확인 1~3 마친 결과 해당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이용허락 필요**

## 저작권 침해 시 대응 방법

▪ **법적 구제 수단을 선택하기 전**

- **[서면 통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뒤, 침해자에게 침해 중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한 후 우편으로 내용증명(저작권자 1부, 우체국 보관 1부, 침해자 1부, 총 3부 작성)을 보내거나 이메일로 통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유도
- **[분쟁 조정]** 침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합의 조건 등에 이견이 있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 이용(소송중에도 가능). 조정제도는 비용이 저렴하고 단기간(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내에 해결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국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 중단 요청]** 온라인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불법복제물이 단시간에 널리 유포되기 때문에 권리자는 불법복제물의 복제·전송을 신속하게 중단시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청한 권리주장자는 그로써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함

**(필요서류) :** 중단 요청서(권리주장자 정보, 중단 요청 저작물 정보 등 포함)
신분증 사본(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추가서류 제출)
권리 소명자료(다음 중 하나 선택)
• 저작권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성명 또는 널리 알려진 다른 이름으로 표시된 저작물 사본 등

▪ **법적 구제 수단 선택**

– **[형사]**

• 저작권침해죄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임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친고죄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3자도 수사기관에 처벌 요구 가능)
• 저작권자는 침해 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진행해야 함
• 침해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7년이 지났다면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
•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하고, 고소 취소 의사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고소 취소의 의사표시는 신중하게 해야 함

– **[민사]**

• 고의든 과실이든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침해의 정지,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을 폐기, 손해배상, 명예 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모두 함께 청구할 수도 있고, 몇 개만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음
• 저작재산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이 그 침해행위에 의해 받은 이익액을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
• 저작재산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수(이용허락에 대한 통상적인 사용료)를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등록된 저작물이 침해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에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
•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저작권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해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

## 저작권 관련 참고자료 위치 안내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관련 기관·단체 누리집에서 아래 자료를 찾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 ⇨ 자료 ⇨ 발간자료**
  -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2025)
  -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분쟁 예방 안내서(2025)
  -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2023,2024)
  - 창작물 공모전 지침 바로알기(2024)
  - 사례로 보는 건축가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2024)
  -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2024)
  - 저작권상담사례집 2023(2024)
  - 저작권 판례 평석집 II(2023)
  - 저작권상담사례집 2023(2023)
  - 저작권상담사례집 2022(2022)
  - 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2022)
  - 저작권 판례 평석집 I(2022)
  - 저작권 등록 신청 지침서(2021)
  - 저작권 판례 50선(2020)
  - 한국 저작권 판례집(16)(2020)
  - 창작물 공모전 지침(2020)
  - 저작권 계약 상담사례집(2019)
  -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2019)
  - 글꼴(폰트)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2019)

-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 ⇨ 자료 ⇨ 음악공연권료 납부대상**
  - 매장음악 저작권 안내 리플릿(2018. 8. 23. 기준)

-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 저작권 표준계약서(4종)
  - 분야별 표준계약서(다수)

- **한국저작권보호원(www.kcopa.or.kr) ⇨ 자료마당 ⇨ SW점검도구**
  - 내 PC 폰트 점검기: 폰트 사용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 스스로가 내 PC에 설치된 폰트를 직접 점검하여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

- **한국저작권보호원(www.kcopa.or.kr) ⇨ 자료마당 ⇨ 공개자료**
  - 저작권 보호 상담 및 심의 사례집(2022)
  - 불법 게임 및 게임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안내서(2022)
  - 권리자가 직접하는 복제·전송의 중단 및 기술적 조치 요청 가이드라인(2021)
  - 저작권 보호 상담 및 심의 사례집(2020)
  - 해외 저작권 침해대응 안내서(2020)

- **한글과컴퓨터(www.hancom.com) ⇨ 공지사항**
  -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제공 글꼴(2022): 한컴 오피스 제공 폰트 목록, 폰트별 라이선스 범위, 라이선스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

## 저작권 관련 주요 사이트

- **저작권상담센터(www.copyright.or.kr/business/counsel/index.do)**
  시스템을 통한 자동상담 및 전화, 화상, 내방, 게시판 등을 통한 상담관 상담 안내·제공

- **공유마당(www.gongu.copyright.or.kr)**
  저작물별로 적용된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부담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저작물 제공

- **공공누리(www.kogl.or.kr)**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공누리 4가지 유형 마크를 통해 개방한 공공저작물 정보를 통합 제공

- **저작권 비즈니스지원센터(https://www.findcopyright.or.kr)**
  권리자찾기정보시스템, 이용허락계약 체결지원, 법정허락 신청 등 서비스 제공

- **한국저작권보호원 COPY112(copy112.kcopa.or.kr)**
  불법복제물 신고 및 권리자의 저작물 보호요청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www.olis.or.kr)**
  오픈소스 라이선스 유형과 다양한 오픈소스 정보를 제공

-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www.interkorea.org)**
  북한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 **한국음악저작권협회(www.komca.or.kr):** 음악저작자(작곡·작사)의 권리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www.koscap.or.kr):** 음악저작자(작곡, 작사)의 권리
- **한국음반산업협회(www.riak.or.kr):** 음반제작자의 권리(신탁관리 및 이용허락)
- **한국연예제작자협회(www.k-pops.or.kr):** 음반제작자의 권리(보상금 징수 및 분배)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www.fkmp.kr):** 음악실연자(가수, 연주자 등)의 권리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www.kolaa.kr):** 어문, 미술, 이미지 저작물에 대한 권리
- **한국방송작가협회(www.ktrwa.or.kr):** 방송작가의 권리
-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www.scenario.or.kr):** 영화시나리오작가의 권리
-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www.kobpra.or.kr):** 방송 실연자(탤런트, 성우 등)의 권리
- **한국언론진흥재단(www.kpf.or.kr):** 신문기사 등에 대한 권리
- **한국문화정보원(www.kcisa.kr):** 공공저작물(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한국영화제작가협회(www.kfpa.net):** 영화 등에 대한 권리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SNS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SNS 채널 모음 링크(https://instabio.cc/4061308yw0tkh)

**유튜브 채널**
저작권 TV(@koreacopyright)

**인스타그램 계정**
koreacopyrightcommission

**페이스북 계정**
한국저작권위원회(@koreacopyright)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한국저작권위원회

**네이버 블로그**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kcc_press)

## 저작권 법률상담

- **대화상담**
  - 전화상담 Tel. 1800-5455
    ※ 평일 09:00~17:00(점심 12:00~13:00)
  - 화상·내방상담(사전예약)
    ※ 평일 10:00~17:00(점심 12:00~13:00)

- **자동상담**
  - 챗봇상담
  - 유형별 상담정보

- **법률문의 게시판**
  - 저작권 법률상담
  - 저작권 계약상담
    ※ 내방상담 예약 및 법률문의 게시판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 ⇨ 저작권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5 저작권 상담 사례집


| | |
|---|---|
| **펴낸날** | 2025년 9월 |
| **기획·집필**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
| **펴낸곳** | 한국저작권위원회<br>경남 진주시 소호로 117<br>서울 용산구 후암로 107(게이트웨이타워5, 16층) |
| **전 화** | 1800-5455 저작권상담센터 |
| **인터넷 누리집** | https://www.copyright.or.kr |
| **제 작** | 한국장애인문화콘텐츠협회 |
| **ISBN** | ISBN: 978-89-6120-616-7 [94010]<br>ISBN: 978-89-6120-038-7 (세트) |